

Global Market Report

2015년 하반기 對韓수입규제 동향과 2016년 전망



CONTENTS

목 차

요 약

I. 2015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

- 1 | 1. 총괄
- 4 | 2.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II. 2016년 對韓 수입규제 전망 /

- 57 | 1. 총괄
- 58 | 2.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요 약

□ '15년 12말 기준, 전 세계 30개국에서 총 166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 조사 진행 중 건 포함

- 규제 국가로는 인도(26건), 미국(18건), 중국과 터키(각 12건씩),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각 11건씩) 등 30개국이며, 이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25건으로 75.3%를 차지함.
-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9건, 세이프가드 51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6건이며 이 중 40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74건, 화학 50건, 섬유 11건, 전기전자 5 건, 기타 제품 26건임.

□ '15년 하반기에 신규 개시된 對韓 수입규제 건은 13개국에서 총 23건

- 2015년 하반기에는 신흥국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두드러짐.
 - 전체 23건 중 3건(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20건이 신흥국에서 규제 도입
 - 규제유형은 세이프가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덤핑 6건, 반덤핑/상계관세 2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5건, 화학 5건, 기타 제품 3건임.

□ '16에도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선진국보다 신흥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금속제품 및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흥국에서의 수입규제 조치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 등 아시아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 당분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
 - 특히,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철강 및 화학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인상을 비롯하여 내국세 차별적용, 수입인허가, 제품인증 등의 조치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

I

2015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1. 총괄

□ '15년 12월말 기준, 30개국에서 총 166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시행

* 조사 진행 중인 40건 포함

- 2015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철강, 화학제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되었으며, 선진국 보다 신흥국에서의 규제 건수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규제국가는 인도(26건), 미국(18건), 터키(12건), 중국(12건), 브라질(11건), 인도네시아(11건) 등 30개국이며, 이 가운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EU를 제외한 신흥국들의 수입규제가 총 125건으로 75.3%의 비중을 차지함.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국가	인도	미국	터키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건수	26	18	12	12	11	11	10	8	7	6

주 : 규제 건수가 5건 이상인 국가 기준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9건, 세이프가드 51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6건이며, 이 중 41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임.

반덤핑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상계관세	계
109(16)	51(22)	6(3)	166(41)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74건, 화학 50건, 섬유 11건, 전기전자 5건, 기타 26건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품목	철강/금속	화학	섬유류	전기전자	기타
건수	74(19)	50(10)	11(1)	5(2)	26(9)

주 : 괄호 안은 조사 중인 건수 / 기타에는 잡제품, 생활용품, 고무제품, 농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음.

□ '15년 하반기에 13개국에서 23건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 신규 도입

- 미국, 칠레,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13개국에서 23건의 신규 조사 개시
 - 국가별로는 미국(3건) 이외에 칠레(4건), 중국(2건), 인도(2건), 말레이시아(2건), 베트남(2건), 이집트(2건) 등 신흥국에서 20건의 규제 조사가 개시됨.
 - 신규로 규제대상이 된 23건 중 셰이프가드 조사가 15건으로 압도적이며, 6건은 반덤핑 조사, 2건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임.
- 품목별로는 전체 규제대상 품목 비중과 마찬가지로 철강금속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제소 건이 대부분이었음.
 - 신규 수입규제 조사대상 품목 : 철강금속(15건), 화학(5건), 기타(3건)

〈 2015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조사개시 내역 〉

연번	규제국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우크라이나	연질 다공성 플레이트 (Flexible porous plates, blocks and sheets of polyurethane foams)	셰이프가드	'15.7.7
2	잠비아	도금강판	셰이프가드	'15.7.10
3	튀니지	세라믹 타일	셰이프가드	'15.7.14
4	중국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섬유 (Polyacrylonitrile Fiber or Acrylic Fiber)	반덤핑	'15.7.14
5	인도네시아	덱스트로스(포도당) 일수염 (Dextrose Monohydrate)	셰이프가드	'15.7.14
6	중국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반덤핑	'15.7.23
7	미국	용접각관(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반덤핑	'15.8.11
8	미국	냉연강판(Cold-rolled Steel Flat)	반덤핑.상계관세	'15.8.18

연 번	규 제 국	품 목 명	규 제 내 용	조 사 개 시 일
9	말레이시아	냉연코일(cold-rolled coil)	반덤핑	‘15.8.28
10	미국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	반덤핑.상계 관세	‘15.9.1
11	베트남	글루탐산나트륨(MSG)	세이프가드	‘15.9.1
12	멕시코	열연 및 냉연강판	세이프가드	‘15.9.2
13	인도	폭600mm이상의 비합금 열연강판	세이프가드	‘15.9.7
14	말레이시아	열연코일(hot-rolled coil)	세이프가드	‘15.9.11
15	칠레	강선재(Steel Wire Rod)	세이프가드	‘15.10.5
16	이집트	디옥틸 프탈레이트	반덤핑	‘15.11.30
17	칠레	강철선(Steel Wire)	세이프가드	‘15.12.1
18	칠레	철망(Steel Mesh)	세이프가드	‘15.12.1
19	칠레	강철못(Steel Nail)	세이프가드	‘15.12.1
20	파키스탄	오프셋인쇄잉크	반덤핑	‘15.12.7
21	인도	폭600mm이상의 합금 열연강판	세이프가드	‘15.12.7
22	이집트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세이프가드	‘15.12.8
23	베트남	반가공 합금 철강재	세이프가드	‘15.12.25

2.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남아프리카 공화국]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남아공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건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1건과 반덤핑 조치 1건 규제 시행 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 1건, 기타 제품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냉동감자칩 (Frozen Potato Chips)	2004.10.20	세이프 가드	‘13.3.8	‘13.12.11	기타	– ‘14.1월부터 2년 11개월 간 시행 · 1년째 : 61.42% · 2년째 : 40.92% · 3년째 : 20.45%
폴리에틸렌 수지용기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s(Excluding liquids and pastes)	3907.60.90	반덤핑	‘10.8.1 (일몰재심)	‘11.3.4	화학	– 반덤핑관세율 : 19.7% – 5년간 관세부과 – ‘11.3.4: 일몰재심 최종판정(한국 19.7%, 인도 54.1%, 대만75%) * 유일한 수출업체였던 SK케미칼은 인도네시아 에 생산공장이 있어 대응 안함. (인도네시아, 중국 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5년 하반기 신규 제소 건 없으며, 기존 규제관련 변동사항 없음.

[대만]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대만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철강 품목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 1건 시행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Certain Cold-rolled Stainless Products)	7219.32/33/34/ 35,7220.20 등 15항목	반덤핑	'13.2.20	'13.11.21	철강 및 금속	- 한국, 중국 대상 -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 GS글로벌/효성/현대/현대BNG 스틸/현대제철 26.53%, 기타 37.65% - 중국 2개업체 20.18%, 기타 38.11% - 기간 : '13.8.15 ~ '18.8.14(5년, 임시 부과 기간 포함)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변동사항 없음.

[러시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러시아의 對韓 수입규제 품목은 없음.
 -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국내시장보호부(Department of Home Market Protection of the EurAsian Commission) 자료에 따르면, 총 15건의 수입 규제조치(반덤핑 13건, 세이프가드 2건)시행 중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대상인 우리나라 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말레이시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말레이시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6건으로, 4건 규제 중
이며 2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5건, 화학 품목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열연코일 (Hot-rolled Coil)	7208.36/37/38/ 39, 7225.30	세이프가드	'15.9.11	-	철강 및 금속	- '15.9.11 열연코일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냉연코일 (Cold-rolled Coil)	7209.15/16/17, 7209.18.29/90, 7225.50.0000	반덤핑	'15.8.28	-	철강 및 금속	- 조사대상 : 한국, 중국, 베트남
후판 (Hot Rolled Plates)	7208.51/52, 7225.40	세이프가드	'14.8.18	'15.6.29	철강 및 금속	- '14.12.11 예비판정 ('14.12.14부터 200일간 23.93% 부과) - '15.7.2부터 3년간 세이프가드 발동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3907.60	반덤핑	'14.6.19	'15.3.13	화학	- 반덤핑 판정 :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석도강판 (electrolytic tinplate)	7210.12	반덤핑	'13.2.20	'13.11.16	철강 및 금속	- 반덤핑 판정 : 한국, 중국 . 기간: '13.11.16~'18.11.15
선재 (Steel Wire Rods)	7213.10/20/ 91/99	반덤핑	'12.6.25	'13.2.19	철강 및 금속	- 반덤핑 판정 :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 무혐의 판정 : 터키 . 기간: '13.2.20~'18.2.19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냉연강판) 냉연강판(Cold 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료
 - Bahru Stainless사의 제소로 한국 포함 9개국에 반덤핑 조사 개시('15.4.28)
 - '15.9.25 예비판정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사 종결하였음.
- (냉연코일)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CSC Steel사의 제소로 한국, 중국, 베트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15.8.28)
 -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 건에 대한 결정을 2015년 12월 26일에서 30일을 연장해 2016년 1월 24일로 예비판정일을 연기하였음.
- (열연코일) 열연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 열연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한국은 수입량 미미하다는 이유로 반덤핑 피해 없다고 결론 내려졌으나('15.2.27에 조사종료), 동일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15.9.11에 개시하였음.

[멕시코]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멕시코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 건이 규제 중임.
 - 품목별로는 섬유(폴리에스터 단섬유사) 1건, 철강제품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열연 및 냉연강판	7208.3701/3801/3901, 7225.3099, 7209.1601/170	세이프가드	'15.9.2	'15.10.7	철강 및 금속	- '15.7.7 멕시코 철강회사들이 멕시코경제부에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역구제조치를 청원함.

	1/1801/5099					- '15.10.7 수입 철강제품에 6개월 간 잠정관세율 15%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 '16.4.4 세이프가드 기간 종료로 관세철폐 예정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로우멜티드 제외)	5503.2001 5503.2002 5503.2003 5503.2099	반덤핑	'92.3.19	'93.8.19 '98.8.20 '03.8.20 '08.8.20 '13.8.20	섬유	- '93.8.19 5년간 반덤핑 관세 결정 . 삼양사 제조, 수출 3.74% . 삼양사 제조, 대우 수출 시 14.81% . 제일합섬 제조, 삼성 수출 시 4.49% . 기타: 32% - '98.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03.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08.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13.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열연 및 냉연 강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멕시코 철강업체가 불황을 겪는 가운데 철강수입이 급증하자 멕시코 철강연합회 (Canacero)는 2015년 7월, 멕시코 경제부에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요청함.
- 이에 멕시코 경제부는 2015년 10월 7일, 수입 철강제품에 180일간 15%의 잠정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하고 관보에 게재함.
 - . 6개월간 한시적으로 HS 코드 97개의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 예정
 - . 한국 철강제품의 경우 열연강판 4개 품목과 냉연강판 4개 품목이 잠정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
 - . 자동차용 강판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무관세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 . FTA체결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멕시코와 FTA가 체결된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은 이번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 '16.4.4부터 세이프가드 기간 종료 및 관세철폐 예정

[미국]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8건으로, 14건은 규제시행 중이며 4건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제품 15건, 전기전자 품목 2건, 섬유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열연강판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7208.10/25/26/27/36/ 37/38/39/40/53/54/9 0, 7210.70, 7211.14/19, 7225.11/19/30/40/99 , 7226.11/19/91	반덤핑/ 상계관세	'15.9.1	-	철강 및 금속	- '15.9.1: 상무부 한국,호주,브라 질,일본,네덜란드,터키,영국 열연 강판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 '15.9.24: ITC 산업피해 예비판 정
냉연강판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	7209.15/16/17/18/25 /26/27/28/90, 7210.70, 7211.23/29/90, 7212.40, 7225.50/99, 7226.92	반덤핑/ 상계관세	'15.8.18	-	철강 및 금속	- '15.7.28: 미철강업체 한국,중국, 브라질,인도,일본,네덜란드,러시 아,영국의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제소 - '15.9.10: ITC 산업피해 예비판 정
용접각관 (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7306.61.1000	반덤핑	'15.8.11	-	철강 및 금속	- '15.7.21: 미철강업체 한국,터키, 멕시코산 용접각관 반덤핑제소 - '15.9.3: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i>pipes and tubes</i>						
부식방지처리강판 (<i>certain corrosion resistant steel product</i>)	7210.30/41/49/61/69/70/90, 7212.20/30/40/50/60, 7215.90, 7217.12/30/90, 7225.91/92, 7226.99	반덤핑/ 상계관세	'15.6.23	-	철강 및 금속	- '15.6.3: 미국 철강업계, 한국 등 5개국산 부식방지처리 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한국산에 대해 80.06%의 덤핑마진 주장 - '15.6.23 상무부 조사 개시 - '15.11.3: 상무부 보조금 혐의 인정 예비판정 * 유니온스틸 및 동국제강 0.69%(미소마진 이하) / 기타 1.37% - '15.12.22: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 동국제강 2.99% / 현대스틸 3.51% / 기타 3.25%)
API 라인파이프 (송유관, welded line pipe)	7305.11.1030/5000, 7305.12.1030/5000, 7305.19.1030/5000, 7306.19.1010/1050/5110/5150	반덤핑	'14.11.6	'15.11.6	철강 및 금속	- 제소측 주장 덤핑마진: 48.49-202.31% - 제소측 주장 보조금율: 미소마진(de minimis) 이상 - '15.3.17 상무부 한국산 API 라인파이프에 보조금 무혐의 예비판정 - '15.5.15 반덤핑 예비판정 : 한국산에 대해 2.52%~2.67%의 덤핑마진 발표 - '15.10.6 상무부 보조금 무혐의 최종판정, 반덤핑 최종판정 (세아제강 2.53%, 현대하이스코 6.19%, 기타 4.36%) - '15.11.6 ITC 반덤핑 산업피해 유효 최종판정
강철 못 (<i>steel nail</i>)	7317.00.5502/03/05/07/08/11/20/30/40/50/60/70/80/90, 7317.00.6530/6560/7500	반덤핑	'14.6.19	'15.6.27	철강 및 금속	- '14.10.28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보조금 무혐의 판정 - '14.12.18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시 덤핑마진율: 대진철강 12.38% 진흥철강 2.13% 기타 7.26%

						- '15.5.14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 : 대진철강 11.80%, 진흥철강 0.0%, 기타 11.80% - '15.6.27 ITC 산업피해 인정 최종판정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무방향성 전기 강판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7225.19.0000, /1000/9000, 7225.50.8085, 7225.99.0090, 7226.92.5000/7050/8050, 7226.99.0180	반덤핑	'13.10.22	'14.11.6	철강 및 금속	- '14.10.7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 POSCO/대우 인터내셔널 6.88%, 기타 6.88% - 상계관세 무혐의 판정 - '14.11.6 ITC 반덤핑 최종판정
유정용 강관 (Oil Country Tubular Good)	7304.29, 7305.20, 7306.29	반덤핑	'13.7.10	'14.8.22	철강 및 금속	- 상무부 '14.7.11 최종판정에서 '14.2.18 예비 무혐의 판정 반복 - '14.7.11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 : 현대하이스코 15.75% 넥스틸 9.89% 기타 12.82% - '14.8.22 ITC 반덤핑 최종판정 - '14.12.18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 미국 세관(CBP)에 한국 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관세 정산(liquidation)을 금지 - '15.9.2 CIT 한국산에 대한 덤핑마진 불인정, 11월 2일까지 재조사 등 후속조치 요구
가정용 세탁기 (residential washer)	8450.20.0090, 8450.11.0050/0080, 8450.90.2000/6000	반덤핑/ 상계관세	'12.1.18	'13.1.23	전기 전자	- '12.12.19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 * 덤핑마진율: 대우 82.41%, LG 13.02%, 삼성 9.29%, 기타 11.86% * 보조금율: 대우 72.30%, 삼성 1.85%, 기타 1.85%
유입식 변압기 (large power transformer)	8504.23..0040/0080, 8504.90.9540	반덤핑	'11.7.14	'12.8.31	전기 전자	- '12.8.31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 : 효성 29.04%, 현대중공업 14.95%, 기타 22%
연벽 사각파이프 (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7306.61.5000/7060	반덤핑	'07.6.28	'13.8.6	철강 및 금속	- '13.8.6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 동아/하이스틸/진방철강/중원/미주철강/유진철강/아신/한겨레/국제 30.66%, 세아/기타 15.79% - '14.6.23일부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PC 강선	7312.10.3010/12	반덤핑	'03.2.27	'09.3.26	철강 및	- '09.3.26 일몰재심 최종판정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금속	결과 : 고려제강/동일철강 54.19%, 기타 35.64% - '09.12.11일부 ITC 일몰재심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15.4.10,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polyester staple fiber)	5503.20.0040/45/60/65	반덤핑	'99.4.30	'11.7.1	섬유	- '11.7.1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 삼영 7.91%, 기타 7.91% - '11.9.30일부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철강후판 (carbon steel plate)	7208.40/51/52/53/90, 7210.70/90, 7211.13/14/90, 7212.40/50, 7225.40/50/99, 7226.91	반덤핑/상계관세	'99.3.16	'14.3.7 (반덤핑) '11.3.8 (상계)	철강 및 금속	- '11.3.7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 동국제강: 2.98%, 기타: 2.98% - '11.3.8 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동국제강 1.38%, 기타 1.38%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코일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in coil)	7219.13/14/31/32/33/34/35/90, 7220.12/20/90	반덤핑/상계관세	'98.6.30	'11.12.1	철강 및 금속	- '10.10.7 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현대제철 0.54%, 대양금속 0.67%, 대한 4.64%, 기타 0.63% - '10.11.2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 포스코 2.49%, 대한 58.79%, 대양금속 5.44%, 기타 2.49% - '11.12.1일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일몰재심 최종판정 공고 반덤핑 부분철회판정 (포스코 : 2.49% → 0%(철회)), 지속(대한 : 58.79% → 58.79%, 기타 : 2.49% → 19.60%) - 제로잉 사용에 대한 WTO 판정 이행
스테인리스 선재 (stainless steel wire rod)	7221.00.05, 15/30/45/75	반덤핑	'97.8.26	'09.10.30	철강 및 금속	- '09.10.30 일몰재심 최종 판정 : 동방/장원/포스코 5.77%, 삼미 28.44%, 기타 5.77% - '10.6.17일자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15.5.1일자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7306.40.50.05/15/40/62/64/85	반덤핑	'91.11.1	'11.11.2	철강 및 금속	- '11.11.2 일몰재심 최종 판정 결과 : 삼미 7.92%, 세아 2.67%, 기타 7% - '11.12.19일자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스탠다드 강관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7306.30.10.00, 50.25/32/40/55/85/90	반덤핑	'91.10.4	'11.10.28	철강 및 금속	- '11.10.28 일몰재심 최종 판정 결과 : 현대강관 6.86%, 한국강관 6.21%, 부산파이프 4.91%, Masan steel tube works 11.63%, 기타 6.37% - '15.12.8 연례재심 결과발표 :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1.42~3.69%의 가중평균덤핑마진 부과, 세아제강 무혐의 판정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API 라인파이프) 美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 한국산에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 '15년 10월 6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API 라인파이프에 덤핑 유효 최종판정을 발표하고 11월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미국의 산업피해를 인정하면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
 - 단, '15년 10월 6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API 라인파이프의 보조금은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서 상계관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 (부식방지처리강판) 美 상무부, 한국산에 보조금 및 덤핑 혐의 인정 예비판정
 - 미국 상무부는 '15년 11월 3일 한국산 부식방지처리강판(일명 내식강)에 보조금 혐의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발표했으며, 12월 22일 반덤핑 관련 예비판정에서도 덤핑 유효 판정을 내리며, 한국산에 대해 현금예치금이 부과 중
- (용접각관) 美 상무부, 한국산 용접각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15년 8월 11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용접각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9월 3일 미국 ITC가 미국 산업피해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조사 지속

- (냉연강판) 美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 '15년 8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으며, 9월 10일 미국 ITC가 미국 산업피해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조사 지속
- (열연강판) 美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 '15년 8월 11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으며, 9월 24일 미국 ITC가 미국 산업피해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조사 지속

[베트남]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베트남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으로, 1건은 규제 시행 중이며 2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금속 품목 각 1건씩 조사 중이며, 기타 품목 1건 규제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반가공 합금 철강재 (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7207.11/19/20, 7224.90, 7213.10, 7213.91, 7214.20, 7227.90, 7228.30, 9811.00	세이프 가드	'15.12.25	-	철강 및 금속	- '15.12.25 : 반가공 합금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한국 포함 모든 국가 대상)

글루탐산나트륨(MSG)	292242	세이프가드	'15.9.1	-	화학	- '15.9.1 :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한국 포함 모든 국가 대상)
식물성 기름 (vegetable oil)	1507.90.90; 1511.90.91; 1511.90.92; 1511.90.99	세이프가드	'12.12.26	'13.8.23	기타	- '13.8.23 : 세이프가드 규제 공고 (4년간 규제 시행) . 1년째(13.5.7~14.5.6): 5% . 2년째(14.5.7~15.5.6): 4% . 3년째(15.5.7~16.5.6): 3% . 4년째(16.5.7~17.5.6): 2% - '15.8.10 : 산업무역부 세이프가드 조치 2년 연장 결정(Decision No.8287 QD-BCT)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글루탐산나트륨) 2015년 9월 1일, 수입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15년 6월 9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수입규제조치 조사기관인 경쟁관리국이 Vedan Vietnam JSC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청원서를 접수함.
 -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15년 9월 1일, 산업무역부는 해외 수입 MSG(화학조미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결정문(Decision No.9269/QD-BCT)을 공표함.
 - 경쟁관리국은 상기 결정문 공표와 동시에 이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돌입 하였으며, '16년 1월 19일, 유관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될 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국가는 베트남의 이 품목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
- * 베트남의 중국산 MSG 수입액은 이 품목 전체 수입액의 약 70% 차지

- (반가공 합금철강재) 2015년 12월 25일,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15년 12월 15일, 베트남 국내 철강재 생산 4개 기업이 수입 합금강 반제품에 대

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경쟁관리국에 요청함.

- 불과 10일 후인 12월 25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전격 공표(Decision No.14296/QD-BCT)
- 베트남의 이 품목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대만 등이나, 일부 품목의 경우 한국 산 수입 비중도 높아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될 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

○ (식물성 기름) 2015년 8월 10일, 식물성 정제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유지 결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존속기간 3년 초과인 세이프가드조치에 있어 조치 존립여부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WTO 협정 및 자국 법령에 의거, 식물성 기름의 현지 시장상황에 대한 중간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 해당 품목 수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입고 있는 피해가 여전히 크다고 판단, 이 조치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Decision No.8287 QD-BCT)
- 상기 조사 및 결정에 따라 규제시행 기간이 하루씩 늦춰짐.

규제시행 기간		적용 관세율
기존	신규	
'15. 05. 07 ~ '16. 05. 06	'15. 05. 08 ~ '16. 05. 07	3%
'16. 05. 07 ~ '17. 05. 06	'16. 05. 08 ~ '17. 05. 07	2%
'17. 05. 07~	'17. 05. 08~	0%

[브라질]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브라질의 對韓 수입규제는 총 11건으로, 10건은 규제 시행 중이며 1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 6건, 철강금속 3건, 섬유 및 기타 제품 각 1건씩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타포린	3921.9019	반덤핑	‘15.3.23	-	화학	
페라이트 자석	8505.1910	반덤핑	‘14.6.16	‘15.5.4	기타	- ‘20.5.4 종료 예정 . Ugimag Korea: US\$ 2,461/t . Dong-A Electric/Pacific Metals : US\$ 117.38/t . 기타: US\$2,461/t * 쌍용: 반덤핑적용 제외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4011.2090	반덤핑	‘13.6.10	‘14.11.24	화학	- ‘19.11.24 종료 예정 . 금호 타이어: US\$ 317.77/t . 한국 타이어: US\$1,794.73/t . 기타: US\$2,031.31/t
폴리프로필렌수지 (polypropylene resin)	3902,1020 3902,3000	반덤핑	‘13.3.19	‘14.8.27	화학	- ‘19.8.27 종료 예정 . LG 화학: 3.2% . 롯데화학: 2.4% . GS Caltex/효성/삼성 : 2.6% . 기타: 6.3%
승용차용 타이어 (Tire)	4011.1000	반덤핑	‘11.12.29	‘14.1.16	화학	- ‘19.1.16 종료 예정 . 한국타이어:US\$ 0.24/kg . 금호타이어:US\$ 0.61/kg . 넥센타이어:US\$ 0.14/kg . 기타업체: US\$ 2.56/kg
나일론사(Nylon synthetic filament yarn)	5402.3111 5402.3119 5402.4523	반덤핑	‘12.7.9	‘13.12.27	섬유	- ‘18.12.27 종료 예정 . 효성: US\$ 156.32/t . 코오롱: US\$ 338.10/t . 태광: US\$ 163.25/t . 기타: US\$ 3.224.91/t
스테인리스 냉연강판(flat-rolled stainless steel)	7219.3200 7219.3300 7219.3400 7219.3500 7220.2094	반덤핑	‘12.4.13	‘13.10.4	철강 및 금속	- ‘18.10.4. 종료 예정 . 포스코: US\$ 267.84/t . 현대: US\$ 267.84/t . 기타: US\$ 940.47/t
평판압연제품 중 후판 (Heavy Plate Steel)	7208.5100 7208.5200	반덤핑	‘12.5.3	‘13.10.3	철강 및 금속	- ‘18.10.03. 종료 예정 . Posco: US\$ 135.08/t . 현대: US\$ 135.84/t

						.기타: US\$ 135.84/t
압연실리콘철강 (flat-rolled product silicon steel)	7226.1900	반덤핑	'11.4.19	'13.7.17	철강 및 금속	- '18.07.17. 종료 예정 .포스코: US\$ 132.50/t .Kiswire: US\$ 132,50/t .기타: US\$ 231.40/t
합성고무(SBR)	4002.1919	반덤핑	'10.6.1	'11.6.2	화학	- '16.6.2. 종료 예정 .LG화학: 3.0% .KKPC: 7.8% .기타: 38.8%
염화비닐수지 (PVC: Polyvinyl chloride resins)	3904.1010	반덤핑	'07.9.21	'08.8.29	화학	- '14.8.14 적용기간 연장 ('19.8.14 종료 예정) .LG 화학: 2.7% .기타: 18.9% * 한화화학: 반덤핑 적용 제외

자료원: 통상개발산업부(MDIC)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5년 하반기 중 한국제품 규제 관련 변동 사항 없음.

[아르헨티나]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아르헨티나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건으로, 반덤핑 1건
규제 중이며 1건은 최종판정 적용 유보 상태임.
- 품목별로는 화학 제품 1건, 전기전자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3907.60.00	반덤핑	'12.04.23	'13.10.25	화학	- 관세율 : 8% - 규제기간 : '13.10.24일부터 5년간 반덤핑규제 적용

삼상 유입 변압기 (단락용량 10,000KVA 초과 600,000KVA 이하의 것)	8504.23.00	반덤핑	'13.01.02	'14.7.2 (적용 유보)	전기전자	- '13.5.23 예비판정 : 한국:178%, 중국:139% - '14.7.2일 최종 덤핑마진 조사결과 발표 : 한국:52%, 중국:54% * 최종판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를 이유로 '17.7.17일까지 적용을 유보함
---	------------	-----	-----------	-----------------------	------	--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삼상 유입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 적용 유보

-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 대외교역청은 2014년 7월 2일에 행정령 308/14를 통해 한국과 중국 제품에 대한 덤핑마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에 각각 52% 및 54%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음.
- 그러나, 아르헨티나 계획관리부는 정부의 에너지 부분 투자확대에 따른 전력설비 기자재 수요 증가로 변압기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5년 7월 17일까지 최종판정 결과 적용을 유보시킴.
- 2015년 7월 16일, 아르헨티나 에너지청 및 연방기획 공공투자부는 초고압(EHV) 변압기(단락 용량이 1만kVA 초과 60만kVA 이하의 것)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 적용을 2년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7년 7월 17일까지 재차 적용 유보됨.
 - . 현재 초고압(EHV) 변압기를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FARADAY SAICyF社이며, TADEO CZERWENY SA社사는 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2년간 변압기 시장의 수요 충족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 . 향후 브라질 국내업체의 생산 활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적용 유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에콰도르]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에콰도르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목재 및 대나무 바닥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목재 및 대나무 바닥제(Wood and Bamboo Flooring and Accessories)	4409 4409.10 4409.21 4409.29	세이프가드	'14.8.28	-	기타	- '14.8.28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피소국 : 한국 포함 모든 수출국(브라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마 제외) - '14.10.20 세이프가드 임시 규제 공고 (최대 200일간) · kg당 US\$1.50 관세 부과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5년 4월 23일, 목재 및 대나무 바닥제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판정 결과 발표
- 산업피해 긍정 판정

[요르단]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요르단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종이제품(기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A4용지(Writing and Printing Paper)	4802.56	세이프가드	'14.8.29	-	기타	- 현재 업계의견 수렴 중이며, 적용여부는 '16년 중 결정 예정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철강봉(Bars and Rods of Iron and Stee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 2015년 12월 16일에 기존에 적용되었던 철강제품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됨.

[우즈베키스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화물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화물차(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8704.31	반덤핑	'15.6.11	-	기타	- '15.6.11 : 한국산과 중국산 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화물차)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관계투자무역부는 '15.6.11에 한국산과 중국산 중량 5톤 이하 화물차(HS Code 870431)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 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진행될 예정임.

- 중량 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반덤핑 조사는 이번이 처음임.

[우크라이나]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우크라이나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으로, 2건은 세이프가드 규제 시행 중이며, 1건은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건, 화학 1건, 기타 제품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연질 다공성 플레이트 (Flexible porous plates, blocks and sheets of polyurethane foams)	3921.13	세이프가드	'15.7.7	-	화학	- '15.7.7 :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식탁용 식기류 (Tableware and kitchenware of porcelain)	6911.10	세이프가드	'13.5.21	'14.3.24	기타	- 적용기한 : '17.5월 - 관세 : 35.6% .적용 12개월 후 관세 32%, .적용 24개월 후 28.8%부과
철강파이프 (Seamless casing and tubing pipes)	7304.29	세이프가드	'07.9.1	'11.10.6	철강 및 금속	- '14.10월에 이어 '15년 3월에도 18개월간 조치연장 결정 . 적용기한 : '16.9월 - 수입쿼터(연간) : 9,608톤('14.4.1~'15.9.30), 19,504톤('15.10.1~'16.9.30)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자동차) 2015년 9월 30일, 세이프가드 규제 조치 종료
 - 2015년 4월 14일부터 인하된 세이프가드 세율 적용하였으나, 2015년 9월 10일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WTO의 권고 및 일본 정부의 항의에 따라 수입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를 9월 30일부로 폐지기로 결정

※ 참고사항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6년 1월부로 러시아에서 생산·수입되는 수입차에 한해 높은 상계관세를 부여기로 결정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관계 악화에 따라 보복적 성격이 강한 수입규제로 보여짐.

[러시아산 수입차에 대한 상계관세율]

품목명	HS코드	유형	시작일	종료 예정일	품목분류	비고
Motor Cars	870322 870323	상계관세	'15.1월	'21.1월	자동차	- 상계관세 최대 17.66% 적용 * Sollers Far East社 - 17.66% * AvtoVAZ社 - 14.57% * 기타 러시아 내 자동차 생산 업체 - 10.41%

(자료원 : 우크라이나 경제무역부)

[이스라엘]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이스라엘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양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양모 (Glass Wool and Rock Wool)	6806.1000 7019.3919	세이프가드	'13.07.02	'13.12.23	기타	- 2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확정 .glass wool: \$0.92/kg .rock wool: \$0.99/kg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5년 하반기 중 규제조치 변동사항 없음.

[이집트]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이집트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으로, 1건은 규제 시행 중이며 2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제품 1건 규제 중이며, 화학제품 2건 조사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3907.60	세이프가드	'15.12.10	-	화학	- '15.12.10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디옥틸 프탈레이트 (Diocetyl Phthalate)	2917.3200	반덤핑	'15.11.30	-	화학	- '07.7~'12.6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되었으며 '12.7.3에 일몰 종료된 제품이나, '15.11.30에 다시 반덤핑 조사 개시
강봉	7213, 7214	세이프가드	'14.10.14	'15.4.15	철강 및 금속	- 관세부과 내역 . '15.4.19~'15.10.13 : 8%, 최소 408 EGP/t . '15.10.14~'16.10.13 : 6.5%, 최소 325 EGP/t . '16.10.14~'17.10.13 : 3.5%, 최소 175 EGP/t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DOP) 2015년 11월 30일, 반덤핑 조사 개시
 - 한국산 DOP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 중
- (PET) 2015년 12월 10일,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이집트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조사 진행 중
- (백설탕)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 2015년 4월 19일부터 한시적으로 200일간 잠정관세(20%) 부과되었으나, 세이프가드 발동 이유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내리고 추가 조치 없이 종료됨.
- (자동차 배터리) 2015년 12월 10일,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 세이프가드 발동 이유 없는 것으로 결론
- (면사) 2015년 12월,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 당초 2014년 12월말에 규제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5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가 12월말 현재 조치 종료됨.

[인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6건으로, 22건이 규제 중이며 4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 17건, 철강 및 금속 6건, 섬유 2건, 기타 제품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폭 600mm 이상의 합금 열연강판 (Hot-rolled flat sheets of alloy steel)	7208, 7225.40/59	세이프가드	‘15.12.7	-	철강 및 금속	- ‘15.12.7: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폭 600mm 이상의 비합금 열연강판 (Hot-rolled flat product of non-alloy steel)	7225.30	세이프가드	‘15.9.7	-	철강 및 금속	- ‘15.9.7: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15.9.14: 해당품목에 대해 200일간 20%의 잠정세이프가드 관세 적용 결정
에틸 헥사놀 (2-Ethyl Hexanol)	2905.16	반덤핑	‘14.11.20	-	화학	- ‘14.11.20: 반덤핑 조사 개시
페놀 (Phenol)	2907.11	반덤핑	‘14.10.15	-	화학	- ‘14.10.15: 반덤핑 조사 개시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304 시리즈	7219, 7220	반덤핑	‘14.3.11	‘15.3.9	철강 및 금속	- ‘15.3.9: 인도 상공부,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판결 · 한국산 180달러/MT, 중국과 말레이시아산 각각 309달러/MT, 316 달러/MT 부과 권고
구연산나트 륨(Sodium Citrate)	2918.15	세이프가드	‘14.3.4	‘14.9.16	화학	- ‘14.9.16: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관세부과율: 1년차 55%, 2년차 50%, 3년차 40%

포화지방 알콜(Fatty Alcohol)	3823.70, 2905.17	세이프가드	'14.2.13	'14.10.9	화학	- '14.10.9: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최종판정 - 관세부과율: 1년차 20%, 2년차 18%, 3년차(6개월간) 12%
고순도 테레프탈산 (PTA)	2917.36	반덤핑	'13.10.8	'15.4.7	화학	- '14.6.19: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 잠정관세: 태광산업 US\$ 19.05/MT, 삼성 석유화학US\$ 29.86/MT, 기타 US\$ 117.09/MT - '15.4.7: 인도 상공부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판결 . 덤핑마진: 23.61~78.28 달러/MT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3102.50	반덤핑-	'13.6.5	'14.11.12	화학	- '14.11.12: 반덤핑 최종판정 - 덤핑마진: 한국 117.20 USD/MT, 중국 137.35 USD/MT, EU 171.79 USD/MT, 우크라이나 157.91 USD/MT
무용접 강관(Seaml ess Pipes, Tubes and Hollow Profiles)	7304.90/19/ 23/29/31/39/ 51/59	세이프가드	'13.4.22	'14.3.11	철강 및 금속	- '14.3.11: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종가세: 1년차 25%, 2년차 15%, 3년차 (6개월 간) 5%
염화메탄 (Methylene Chloride)	2903.12	반덤핑	'13.4.4	'14.4.2	화학	- '14.04.02: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 관세부과금: 한국 0.21USD/Kg
알루미늄 휠(Cast Aluminium Alloy Wheels)	8708.70	반덤핑	'12.12.10	'14.6.9	기타	- '14.06.09: 반덤핑 최종판 정(덤핑마진: 1.18 USD/kg) - '15.5.22: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기간: '14.4.11부터 5년간)

디옥틸 프탈레이트 (DOP)	2917.39	세이프가드	'12.5.23	'12.11.6	화학	- '12.11.16: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증가세: 1년차 15%, 2년차 10%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2917.35	반덤핑	'11.4.29	'12.12.24	화학	- '12.12.24: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 애경유화 무협 의, 기타 91.12USD/MT
폭 600mm 미만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400 시리즈	7220.20/90	반덤핑	'10.8.16	'11.11.14	철강 및 금속	- '11.11.14: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 US\$1,491/MT
PVC Paste Resin	3904.22	반덤핑	'09.11.3	'11.05.02	화학	- '11.05.02: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 한화 무협의, LG 무협의, 기타 US\$1,706/MT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7219.31/32/ 33/34/35/90	반덤핑	'08.11.25	'09.11.24	철강 및 금속	- '14.04.17: 반덤핑 일몰 재심 개시공고 - '15.10.12 반덤핑 일몰재 심 최종판정, 12.11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한국 업체 5.39~13.44%)
인산	2809.20	반덤핑	'08.11.12	'09.11.11	화학	- '14.07.16: 반덤핑 일몰 재심 개시공고
고무노화 방지제 (PX-13, 6PPD)	3812.10/20/ 30, 2934.20, 2925.19/20	반덤핑	'07.7.6	'13.07.05	화학	- '13.07.05: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 금호석유화학 36.23INR/kg, 기타 42.99INR/kg - '14.04.29: 규제 연장
아세톤	2914.11	반덤핑	'07.2.12	'08.05.09	화학	- '14.12.04: 상공부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 덤 핑마진 79.75 UDS/MT - '15.2.18 재무부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추가연 장 결정

나일론사 (Nylon Filament Yarn)	5402.10 (고강력사 제외)	반덤핑	'05.7.1	'06.07.03	섬유	- '11.11.19: 일몰재심 최종판정 - 한국 1.14 Kg/US\$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2836.40	반덤핑	'02.12.19	'09.05.20	화학	- '09.05.20: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 유니드 \$9.45/MT, 기타 \$123.86/MT - '14.06.16: 일몰재심 개시 - '15.8.15 일몰재심 결과 공지(유럽과 중국산은 반덤핑관세 폐지, 한국산 유지, 대만산 관세율 인상)
유연성 고분자 판재 폴리올	3907.20/91/ 99	반덤핑	'02.5.11	'04.11.11	화학	- '14.09.25: 반덤핑 관세 부과 추가 연장 (* 2015.8.30.까지 1년간 추가 연장)
가성소다/ 수산화나트 륨	2815.11/12	반덤핑	'01.5.14	'03.08.04	화학	- '08.11.21: 일몰재심 최종판정 - 반덤핑: 한화석유화학 1.21%(무혐의), 기타 \$401.05/MT와 수입 가격의 차이(8.18%) - '13.12.19: 일몰재심 개시
아크릴섬유 (Acrylic Fiber)	5503.30	반덤핑	'96.9.13	'00.04.19	섬유	- '02.08.06: 일몰재심 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0.225/kg, 덤핑마진: 16.53% - '13.9.24: 일몰재심 조사 개시 - '15.6.1 :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결정
NBR고무	4002.59	반덤핑	'95.3.15	'97.01.31	화학	- '09.01.02: 일몰재심 최종 결과 지속판정 - 반덤핑: LG, 금호석유화학 US\$38.73/MT(0.05%), 기타 US\$362.75/MT (13.42%) - '13.12.30: 일몰재심 조사개시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합금/비합금 열연강판) 2015년 하반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비합금 열연강판(2015년 9월 7일)과 합금 열연강판(2015년 12월 7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비합금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200일간 20%의 잠정세이프가드 관세 적용 중
- (탄산칼륨) 일몰재심 결과 발표,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유지 결정
 - 인도 재무부는 인도 탄산칼륨 제조업체인 Alkalies & Chemicals Ltd.사의 대만·한국·중국·유럽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관세 재조사 진정서를 접수받아 2015년 8월 12일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사항을 재공지함.
 - 유럽산·중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폐지된 반면,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에는 변동이 없었음. 대만산 탄산칼륨에 한해서 반덤핑 관세율을 인상함.
-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2015년 10월 12일,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 한국 업체에 5.39~13.44%의 관세 부과 결정
- (카본블랙) 2015년 11월 20일, 반덤핑 조사 종료
 - '15년 2월에 조사 개시된 카본블랙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료

[인도네시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1건으로, 7건은 규제 시행 중이며 4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7건, 화학 1건, 섬유 1건, 기타 제품 2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덱스트로스 (포도당)일수염 (Dextrose Monohydrate)	1702.30	세이프가드	'15.7.14	-	기타	- '15.7.14 :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3102.30.00.00	반덤핑	'15.6.19	-	화학	- 제소업체 : PT Kaltim Ntrate Indonesia - 대상국가 : 호주, 말레이시 아, 한국, 중국
냉연스테인리스강 (Cold-Rolled Stainless Steel)	7219.32.00.00 7219.33.00.00 7219.34.00.00 7219.35.00.00 7219.90.00.00 7220.20.10.00 7220.20.90.00 7220.90.10.00 7220.90.90.00	반덤핑	'14.12.22	-	철강 및 금속	- 제소업체 : PT Jindal Stainless Indonesia - 대상국가 : 중국, 태국, 말레 아시아, 한국, 대만, 싱가포르 - '15.12.18 : 조사기한 '16.3.22 로 연장
코팅종이와 판지 (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including Barknotes Paper)	4810.13.11.00 4810.13.19.00 4810.13.91.90 4810.13.99.90 4810.14.11.00 4810.14.19.00 4810.14.91.90 4810.14.99.90 4810.19.11.00 4810.19.19.90 4810.19.91.90 4810.19.99.90	세이프가드	'14.6.20	'15.9.21	기타	- 제소업체 :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PT Pindo Deli Pulp and Paper Mills - '15.9.21 : 무역보호위원회, 산업피해 최종판정
합금강 (I & 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	7228.70.10.00 7228.70.90.00	세이프가드	'14.02.12	'15.1.21	철강 및 금속	- Safeguards Import Duty . 1년차 : 26% . 2년차 : 22% . 3년차 : 18%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Wire Rod)	7213.91.10.00 7213.91.20.00 7213.91.90.00 7213.99.10.00 7213.99.20.00 7227.90.00.00	세이프가드	'14.01.17	-	철강 및 금속	- 제소업체 : PT Ispat Indo, PT Krakatau Steel.

비합금 평판강판 (Flat-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0.61.11.00	세이프가드	‘12.12.19	‘14.06.07	철강 및 금속	- Safeguards Import Duty .1년차 : 4,998,784 루피아/톤 .2년차 : 4,314,161 루피아/톤 .3년차 : 3,629,538 루피아/톤 - 규제대상 : 한국포함
석도강판 (Tin Plate Coil/Sheet)	7210.12.10.00 7210.12.90.00	반덤핑	‘12.6.25	‘14.01.15	철강 및 금속	- 대상국 : 한국, 중국, 대만 - 반덤핑 관세 : TOC Steel 6.2%, 동부제철 7.9%, 신화 실업 4.4%, 기타 7.9%
냉연코일(Cold Rolled Coil)	7209.16.00.10, 7209.17.00.10, 7209.18.90.00, 7209.26.00.10, 7209.27.00.10, 7209.28.89.00, 7209.90.90.00, 7211.23.20.00, 7211.23.90.90, 7211.29.20.00, 7211.29.90.00, 7211.90.10.00, 7211.90.90.00	반덤핑	‘11.6.24	‘13.3.19	철강 및 금속	- 대상국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 ‘13.3.19일 최종 판정 - 반덤핑 관세 : 현대 11%, 포스코 10.9%, 동부제철 10.6%, 동국제강 10.1%, 기타 11% - 기간 : ‘13.03.19~’16.03.19
면사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5205.27.00.00 5205.28.00.00 5205.33.00.00 5205.34.00.00 5205.46.00.00 5206.33.00.00 5206.34.00.00 5206.44.00.00	세이프가드	‘10.6.25	‘14.5.28	섬유	- Safeguards Import Duty . 1년차 : 28,065 루피아 / kg . 2년차 : 25,522 루피아 / kg . 3년차 : 22,979 루피아 / kg - 기간 : ‘14.5.28~’17.5.28
연연코일 (Hot Rolled Coil)	7208.10.0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27/36/3 7/38/39/90	반덤핑	‘09.4.8	‘13.11.27	철강 및 금속	- 한국 :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하이스코를 제외 한 모든 기업—8.8 % - 기간 : ‘11.27 ~ ’16.27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텍스트로스 일수염) 2015년 7월 14일,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조사대상 국가 : 한국,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 (코팅종이/판지) 2015년 9월 21일,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 인도네시아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최종 판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1년차 9%, 2년차 7%, 3년차 5%
- (냉연스테인리스강) 2015년 12월 18일에 냉연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기한을 2016년 3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일본]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일본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2815.20	반덤핑	'15.5.26	-	화학	- 중국도 조사대상 - 조사신청에 의한 덤핑 마진율은 한국산 56.88%, 중국산 81.15% * 덤핑마진율 산식 : (정상가격-수출가격) / 수출가격 × 100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5년 하반기 중 규제조치 변동사항 없음.

[잠비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01 기준 잠비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도금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도금강판 (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and trailers)	7209.16/17/28, 7219.11/20/30/ 41/61/69/70, 8716.20/31/39/ 40	세이프가 드	'15.7.10	-	철강 및 금속	- 한국포함 모든 국가 대상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도금강판) 2015년 7월10일, 도금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180일간 잠정조치 발동

[중국]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2건으로, 12건 모두 반덤핑 조치이며 10건은 규제 시행 중이고, 2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 8건, 섬유 2건, 철강금속 1건, 기타 품목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방향성 전기강판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7225.11.00 7226.11.00	반덤핑	'15.7.23	-	철강 및 금속	- '15.7.23 : 중 상무부,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개시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섬유 (Polyacrylonitrile Fiber or Acrylic Fiber)	5501.30, 5503.30, 5506.30	반덤핑	'15.7.14	-	섬유	- '15.7.14 반덤핑 조사개시 . 제소자 주장 덤핑마진율: 한국 52.58%, 일본 27.23%, 터키 17.56%
폴리실리콘 (Polysilicon)	2804.6190	반덤핑	'12.7.20	'14.1.20	화학	- '14.1.20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 관세: OCI: 2.4%, 한국실리콘: 2.8%, 한화케미칼/삼성정밀화학: 12.3%, KCC: 48.7%, 웅진폴리실리콘: 12.3%
테레프탈산 (TPA; Terephthalic Acid)	2917.3611 2917.3619	반덤핑	'09.2.12	'10.8.12	화학	- '10.8.12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삼성석화 2.0%, KP 케미칼 2.0%, 태광 2.4%, 효성 2.6%, 삼남석화 3.7%(주요수출품 QTA(140만톤)제외), SK유화 수출품목 QTA 전량 조사대상 제외
아디프산 (Adipic Acid)	2917.12	반덤핑	'08.11.10	'09.11.2	화학	- '09.11.2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 관세: 로디아 5.9%, 아사이

						카세이 케미컬 5%, 기타 16.7% - '14.10.31 반덤핑 일몰재심 입안조사 - '14.11.2 일몰재심 기간 관세 지속부과 - '15.11.2 : '15.11월부터 반덤핑 규제조치 5년 연장 결정
아세톤 (acetone, Dimethyl ketone 또는 2-Propanone)	2914.1100	반덤핑	'07.3.9	'08.6.8	화학	- '08.6.8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LG화학 5%, 금호피앤비 8.9% - '10.9.10 금호피앤비 관세 4.3%로 인하 - '14.6.8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과 5년 연장)
비스페놀A (Bisphenol-A)	2907.2300	반덤핑	'06.8.30	'07.8.30	화학	- '07.8.30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금호피앤비화학 5.8%, LG석유화학 6.4%, 기타 37.1% - '13.8.29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과 5년 연장)
폴리우레탄 및 스판덱스	5402.4410 5402.4900 5402.6920	반덤핑	'05.4.13	'06.10.13	섬유	- '06.10.13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효성 0%, 코오롱 2.31%, 동국무역2.86%, 기타 기업 43% - 12.10.12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과 5년 연장) - 관세: TK케미컬 2.86%, 태광 2.31%, 기타 61%
ECH 에 피 클로로 히 드린, (Epichlorohydrin)	2910.3000	반덤핑	'04.12.28	'06.6.28	화학	- '06. 6.28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 - '12.6.27 관세부과 5년 연장
히드라진 수산화물 (Hydrazine Hydrate)	2825.1010. 00	반덤핑	'03.12.17	'05.6.17	화학	- '05. 6.17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KOC 28%, 기타 35% - '11.06.17 관세부과 5년 연장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기타	- '05.1.1 반덤핑 최종판정

(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 관세: LG전선 7%, 옵토매직 13%, 기타 46% - '10.12.31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와 5년 연장) - '13.03.01: 반덤핑 세율 변경 - 관세: LS전선 9.1%, 옵토매직(THAHAN) 7.9%
PVC (Polyvinyl chloride)	3904.1000	반덤핑	'02.3.29	'03.9.29	화학	- '03. 9.29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LG화학 6%, 한화석유화학 12%, 기타 76% - '09. 9.28: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와 5년 연장) - '14.9.28 일몰재심 입안조사 - '15.10.8 : 반덤핑 규제조치 3년 연장 결정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섬유) 반덤핑 조사 개시

- 2015년 7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공고
-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피해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임.

○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

- 2015년 7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공고
-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피해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임.

○ (테레프탈산) 연례재심 실시

- 2015년 8월 10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테레프탈산에 대해 반덤핑 연례재심 실시 공고

○ (폴리염화비닐(PVC)) 반덤핑 조치 3년 연장 결정

- 2015년 10월 8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폴리염화비닐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2015년 9월 28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3년간 지속 부과한다고 최종판정
- 폴리염화비닐은 2003년 9월 반덤핑 조치를 실시했고, 2009년 9월 제2차 반덤핑 조치, 2014년 9월 반덤핑 연례재심 관련 입안조사 실시

○ (아디프산) 반덤핑 조치 5년 연장 결정

- 2015년 11월 2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아디프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5년 연장하기로 최종결정

[칠레]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칠레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4건으로, 4건 모두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품목 4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강철선 (steel wire)	7210.10/20/30/90, 7229.90, 7312.10, 7313.00	세이프가드	'15.12.1	-	철강 및 금속	- '15.12.01: 한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강철못 (steel nail)	7317.0010/09, 7326.20/90	세이프가드	'15.12.1	-	철강 및 금속	- '15.12.01: 한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철망 (steel mesh)	7314.19/31/39/41/42/49	세이프가드	'15.12.1	-	철강 및 금속	- '15.12.01: 한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강선재 (steel wire rod)	721320, 72139110/20/90, 722710/20/90	세이프가드	'15.10.05	-	철강 및 금속	- '15.12.01: 한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캐나다]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캐나다의 對韓 수입규제는 총 8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이 7건, 전기전자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유정용 강관 (Oil Country Tubular Goods II)	7304290011/19/2 1/29/31/39/41/49/ 51/59/61/69/71/79 7304390010 7304590010 7306290011/19/2 1/29/31/39/41/49 7306300029/39 7306500090 7306900010/20	반덤핑	‘14.07.21	‘15.3.3	철강 및 금속	– ‘15.5.20 : 일부기업 최종판정(‘15.3.3)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조사 실시 (* 기 발표된 최종판정은 재조사 결과 발표시까지 적용 보류) – ‘15.12.14 : 재조사 결과 발표 (* 정상가격 제출한 한국기업 5개사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부과 철회)
콘크리트 보강 철근 (Concrete Reinforcing bar)	7213100000 7214200000 7215900090 7227900090	반덤핑	‘14.6.13	‘14.12.10	철강 및 금속	– ‘14.12.10 최종판정 : 현대제철에는 13.3%, 이외 한국산 제품에는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보조금 무혐의
후판(저합금강) (Steel Plate VII)	7208510010/91/9 2/93/94/95 7208520010/91/9 2/93/94/95	반덤핑	‘13.9.5	‘14.4.17	철강 및 금속	– ‘14.04.17 최종판정 : 현대종합상사(20.9%), 현대제철(1.9%), 포스코(포항, 12.7%), 포스코(광양, 20.8%), 이외 한국산(59.7%)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동관 (Copper Tube)	7411100010 7411100020 7411100031 7411100039	반덤핑	‘13.5.22	‘13.11.18	철강 및 금속	– ‘13.11.18 최종판정 : 능원금속에는 5.5%, 이외 한국산 제품에는 82.4%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14.9.2 재조사 - '15.1.30 재조사 결과 발표 : 가격정보를 회신한 능원금속에는 반덤핑 관세율 개별 통보(비공개), 기타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반덤핑 관세율(82.4%) 유지 결정
유압식변압기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8504230000 8504909010 8504909082 8504909090	반덤핑	'12.4.23	'14.3.6	전기전자	- '12.10.22 최종판정 - '12.11.21 연방법원 항소 접수 - '12.12.6 연방법원 최종판정 재고 명령 - '14.3.6 최종판정 수정 : 호성 34.8%, 현대중공업 9.1%, 이외 한국산 제품에는 101%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탄소강용접관 (Carbon Steel Welded Pipe II)	7306300014/19/24/29/34/39	반덤핑	'12.5.14	'12.12.11	철강 및 금속	- '12.12.11 최종 판정 : 반덤핑 관세 54.2% 부과 결정 - '13.5.7 재조사 결과 발표 : 상기 반덤핑 관세율 유지 결정
동제관연결구 (Copper Pipe Fittings)	7412100011/19/90 7412200011/12/19/90	반덤핑	'06.06.08	'07.1.18	철강 및 금속	- '07.1.18 최종판정 : 정상가를 제출한 정우금속 외 한국산 제품에 242%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14.5.30. 재조사 후 상기 조치 유지 결정 - '15.9.14 일부 피제소 기업 이의제기에 따라 재조사 착수 ('15.9.17~'16.2.6)
구조용 강관 (Hollow Structural Section)	7306300023/33 7306500030 7306610012/22	반덤핑	'03.3.21	'03.11.17	철강 및 금속	- '03.11.17 최종판정 : 한국산 제품에 89%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13.8.8 일몰재심 결과 상기 결정 유지

(자료원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유정용 강관) 2015년 3월 3일에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조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일부 피제조 기업의 이의제기로 2015년 5월 4일 동 건에 대한 재조사 착수하여 12월 14일에 결과를 발표
 -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세아제강 등 정상가격을 제출한 한국기업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폐지 결정
 - . CBSA 요청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수출업체에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신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한국 주력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정상가를 산출한 반면, 소극적인 태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베트남 업체들에 대해서는 37.4%의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 (동제관연결구)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5년 9월 17일, 동제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관세에 대한 재조사 착수 발표
 - 이번 재조사는 일부 피제조 기업들이 캐나다 기업의 피해가 과장됐다는 이의제기에 따른 것으로, CBSA는 국별 정상가격, 시장구조, 생산비용, 정부보조금 등을 종합 조사하여 2016년 2월 6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

[코스타리카]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코스타리카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도정미(Pounded Rice)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중이나, 한국은 코스타리카에 수출 중인 업체가 없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도정미	1006.30.90.91, 1006.30.90.99	세이프가드	'14.2.11	'15.1.8	기타	- 한국도 해당국이나 대상 업체 없음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도정미) 2016년 2월 19일부터 총 53.66%의 관세 적용되나,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도정미 수출 없음.
 - 기존 관세(35%) 및 세이프가드 관세(18.66%)

〈 도정미 총관세율 〉

법적 효력 시기(1년간)	총관세율(%) (세이프가드 + 관세)
2015년 2월 19일	59.88%
2016년 2월 19일	53.66%
2017년 2월 19일	44.44%
2018년 2월 19일	41.22%
2019년 2월 19일	35% *세이프가드 종료

[콜롬비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콜롬비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4건으로, 2건은 반덤핑 규제시행 중이며, 2건은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3건과 철강제품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DOP 가소제 (Diocetyl Phtalate)	2917.32.0000	반덤핑	'15.4.17	'15.12.4	화학	- '14.1.20 반덤핑 조사 개시됐으며, '14.8.25의 최종판정에서 한국산은 조치 제외됨. - '15.4.17 재심에 회부돼 '15.12.4에 최종 덤핑 판정 받음.
PVC 필름 (Rigid PVC Film)	3490.49.0000	반덤핑	'13.2.1	'13.11.13	화학	- 수입 신고가 U\$3.18/kg 단일화 및 신고가가 위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관세로 부과

						- 2016.11.13까지 적용 후 연장여부 결정
합금시트	7225.92.0000	세이프가드		'15.7.21	철강 및 금속	- '15.7.21부터 1년간 추가관세 16% 부과
PVC 프로파일	3916.20.0000	세이프가드		-	화학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기존에 조사 중이었던 타이어코드 직물, 합성필라멘트, 철강파이프, 강선재 등은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되었으며, 2015년 12월말 현재 1개 품목(PVC 프로파일)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조사 중임.
- (DOP 가소제) 2014년 1월에 멕시코와 함께 덤핑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판정에서 제외된 DOP 가소제의 경우, 2015년 4월 17일에 개최된 재심의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4일에 최종 덤핑 판정을 받았음.

[키르기스스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0 건임.
 - 품목별로는 1건(밀가루)이 세이프가드 규제중이었으나,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가입으로 철폐됨.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5년 5월, 키르기스스탄이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가입함에 따라 밀가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철폐되었음.

[태국]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태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7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 품목 6건, 기타 품목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 (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	7208.36/37/3 8/39/51/52/5 3/54	세이프가드	‘14.01.30	‘14.12.23	철강 및 금속	– 세이프가드 관세 · ‘14.12.24-’15.6.6.: 21.92% (CIF) · ‘15.6.7-’16.6.6.: 21.52% (CIF) · ‘16.6.7-’17.6.6.: 21.13% (CIF)
합금 열연강판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with certain amounts of alloying elements)	7225.30, 7225.40, 7226.91	세이프가드	‘12.11.28	‘13.2.27	철강 및 금속	– 세이프가드 관세 · ‘13.2.27-’15.2.26.: 44.20% (CIF) · ‘14.2.27-’15.2.26.: 43.57% (CIF) · ‘15.2.27-’16.2.26.: 42.95% (CIF) *개발도상국에서 수입 (수입시장 점유율 3%미만), 냉연가공용, 자동차 산업용, 강화공정 또는 특수등급용으로 수입,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 ‘15.7.24: 세이프가드 규제 연장 결정
유리블록 (Glass Block)	7016.9	세이프가드	‘10.12.16	‘11.8.3	기타	– ‘14.1.14 세이프가드 규제 연장 결정 : * 세이프가드 관세 · ‘15.1.15-’16.1.14 :

						26.00% (CIF) 또는 8.23 baht/piece 중 높은 것 . '16.1.15-'17.1.14 : 24.50% (CIF) 또는 7.73 baht/piece 중 높은 것
아연도금강판 (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	7210.61	반덤핑	'11.07.08	'13.1.7	철강 및 금속	- 한국, 중국, 대만 대상 - 동부제철 16.25%, 유니온스틸 13.82%, 현대하이스코 및 POSCO 15.40%, 기타 22.55% . 기간: '13.1.10-'18.1.9 - '14.2.11: 반덤핑 중간 재심 개시
도색 아연도금강판(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	7210.70	반덤핑	'11.07.08	'13.1.7	철강 및 금속	- 한국, 중국, 대만 대상 . 기간: '13.1.10-'18.1.9 - '14.3.11: 반덤핑 중간 재심 개시 - '15.3.19: 반덤핑 재심 결과 통보 . 덤핑마진율: 10.70% (유니온스틸은 관세부과 면제)
재압연용 열연강판 (Flat-ho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7208, 7211.13/14/ 19 (7208.25,26 ,27,39는 제외)	반덤핑	'02.07.22	'13.8.6	철강 및 금속	- 한국 대상 - 포스코 13.58%, 현대제철 13.96%, 기타 58.85% . 기간: '09.5.23-'14.5.22 - '14.5.27: 일몰재심 착수 - '15.5.25: 일몰재심 결과 규제 5년 연장 결정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냉간압연품) (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	7219.32/33/ 34/35, 7220.20	반덤핑	'02.02.22	'03.3.10	철강 및 금속	- 한국, 일본, 대만, EU 대상 - '09.3.19 일몰재심에서 조치 5년 연장 결정 - '14.4.3 일몰재심 착수 - '15.2.27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결정 . 덤핑마진율: 한국50.99% . 기간: '15.2.27-'20.2.26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합금 열연강판) 2015년 7월 24일,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결정 발표

– 2019년 2월 26일까지 세이프가드 규제조치 적용기로 결정

* 현행 세이프가드 관세율 : '15.2.27~'16.2.26 42.95% (CIF 기준)

* 연장기간 중 세이프가드 관세율 : '16.6.27~'17.2.26 41.67% (CIF 기준)

'17.2.27~'18.2.26 40.42% (CIF 기준)

'18.2.26~'19.2.26 39.21% (CIF 기준)

[터키]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터키의 對韓 수입규제 건수는 전체 12건으로, 10건 규제 시행 중이며 2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건, 화학 2건, 섬유 3건, 전기전자 1건, 기타 품목 5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자기 및 세라믹 주방용품 (Porcelain and Ceramic Tableware, Kitchenware)	6911.10, 6912.00	세이프가드	'15.4.25	-	기타	- '15.4.25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벽지류(Wallpapers and similar wall coverings)	4814.20, 4814.90	세이프가드	'14.12.12	'15.6.20	기타	- '14.12.12,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15.6.20 최종판정(경제부) - '15.7.7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15.8.6 시행예정) 1년차 \$5/kg 2년차 \$4.5/kg 3년차 \$4.0/kg

휴대전화 (Mobile phones)	8517.12.	세이프가드	‘14.12.5	-	전기전자	- ‘14.12.5,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테레프탈산	2917.36	세이프가드	‘13.1.8	‘14.6.30	화학	- ‘14.4.11 세이프가드 예비 판정, 부과관세율 1년차 4%, 2년차 3.75% - ‘14.6.30 최종결정 (관보 게재) - 국내대상업체 : 효성화학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과 그 부분품	7315.11.90, 7315.12, 7315.19	반덤핑	‘12.12.14	‘13.12.12	철강 및 금속	- ‘13.12.12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PET	3907.60	세이프가드	‘11.3.11	‘11.8.22	화학	- ‘11.8.22 최종결정 1년차 8%, 2년차 7.5%, 3년차 7% - 국내대상업체 : KP케미칼, TK케미칼, SK케미칼
여행도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4202	세이프가드	‘07.6.5	‘14.4.7	기타	- ‘14.4.7 세이프가드 규제 연장 판정, 1년째(‘14.4.8~‘15.4.7) : 2.40 USD/Kg ~ 최대 3.50 USD/Piece, 2년째(‘15.4.8~‘16.4.7) : 2.30 USD/Kg ~ 최대 3.25 USD/Piece
안경테	9003.11/19	세이프가드	‘07.2.11	‘14.2.19	기타	- ‘14.2.19 세이프가드 규제 조치 연장 (향후 2년) - CIF 가격이 개당 35 USD 미만일 경우 수입부과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 - HS코드 9003.11 (플라스틱안경테):1.75 (‘14.3.5~‘15.3.4), 1.50 (‘15.3.5~‘16.3.4) - HS 코드 9003.19 (기타 안경테) : 2.00 (‘14.3.5~‘15.3.4) 1.75 (‘15.3.5~‘16.3.4)

모터사이클	8711.10/20/30	세이프 가드	'06.8.15	'10.1.14	기타	- '10.1.14 연장조치 ('09.8.15~'12.8.14) - '12.4.6 재심 개시 - '12.7.11 세이프가드 3년간 연장 결정 ('15.8.14까지)
금속드리사	5605.00	반덤핑	'04.2.7	'10.7.24	섬유	- '10.7.24 일몰재심 결과 발표 - 국내대상업체 : 기신, 대하산업, 모던텍스
합섬장(폴리에스터장)섬유직물	5407.41~44, 51~54, 61, 69	반덤핑	'00.10.31	'08.8.1	섬유	- '08.8.1 일몰재심 최종 판정 - '13.7.24 일몰재심 조사 개시 - '14.4.17 현재 우리 제품에 14.64%~40%의 관세율이 적용
폴리에스터 단섬유	5503.20	반덤핑	'99.3.4	'12.5.16	섬유	- '12.5.16 일몰재심 최종 조사결과 한국산(전 생산업체) CIF 6.2% - 국내대상업체 : 새한, 대한화섬, 고합, 삼양사, 선경, 휴비스, SK Chemical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섬유직물) 2015년 5월 30일, 추가관세 조치 연장 과정에서 한국 적용 제외
 - '11.1.13일 조사 개시된 이래 '11년 7월에 섬유직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수입감시(Surveillance) 목적의 추가관세(Additional Duty) 부과 결정한 바 있음.
 - '11.7.22일 추가관세 부과된 섬유직물(터키 세번 HS 5408, 5407)에 대한 세이프가드 감시 관련 추가관세 조치가 '15.5.30일부로 갱신 연장되는 과정에서 한국 및 EU는 FTA 협정체결국으로서 적용 제외돼 수입규제를 받지 않게 됨.
- (종이제품) 2015년 8월 28일,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 '14년 6월 21일 조사 개시된 종이제품 (터키 세번 HS 4802.55/56/57/ 58)에 대해 세이프가드 무혐의로 조치 없이 최종 조사 종결하고 2015.8.28.일자 관보에 게재

○ (전기제품류) 2015년 10월 31일,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 전기제품류(터키 세번 8508.11, 8509.40, 8509.80, 8516.31, 8516.60)에 대한 조사가 '07.12.19일 개시된 이래 '13.11.1~'14.10.31간의 1차 세이프가드 조치에 이어 '14.11.1~'15.10.31 간의 2차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규제 종료됨.

[튀니지]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튀니지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으로, 3건 모두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세라믹 타일 (Ceramic Tiles)	6907.10/90, 6908.10/90	세이프가드	'15.7.14	-	기타	- 제소자 : Carthago Ceramic 등
유리병(Glass Bottles)	7010.90	세이프가드	'14.10.15	-	기타	- 제소자 : Societe Tunisienne de Verrerie
중밀도 섬유판 (Medium Density Fibreboard, MDF)	4411.12 4411.13 4411.14	세이프가드	'14.9.30	-	기타	- 제소자 : Les Grands Ateliers du Nord

* 현재 조사 중인 3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튀니지 수출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함.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세라믹 타일) 2015년 7월 14일,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튀니지 Carthago Ceramic등 다수 기업들의 제소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동 제품 수입 건에 대해 자국 산업 피해 여부 조사 중임.

[파키스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파키스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4건으로, 3건은 규제 시행 중이며 1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3건, 기타 품목 1건임.
 - 규제 유형은 4건 모두 반덤핑 조치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오프셋인쇄 잉크	3215.1110/90, 3215.1910/90	반덤핑	'15.12.7	-	기타	- '15.10.06 : 반덤핑관세 부과 관련 원심개시 요청서 접수 - '15.12.07 : 반덤핑 조사 개시
포름산 (Formic Acid 85%)	2915.1100	반덤핑	'11.2.30	'12.2.10	화학	- 반덤핑관세 한국 44.1%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09.8.31	'10.9.27	화학	- 반덤핑관세 한국 : 0~14.77% (한솔, OCI 부과 제외)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2917.3500	반덤핑	'09.5.29	'10.9.30	화학	- 반덤핑관세 한국 : 7.3%

자료원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국가관세위원회)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오프셋인쇄 잉크) 신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5년 12월, 오프셋인쇄 잉크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됨.
 - 이는 현지 업계의 규제 요청이 접수되었기 때문이며 파키스탄 당국은 한국산 뿐 아니라 중국산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 중임.

[필리핀]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필리핀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 규제 시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건, 기타 품목 2건 규제 중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신문인쇄용지	480100	세이프가드	'13.9.20	'15.5.11	기타	- '13.9.20 : 조사개시 - '13.10.22 : 공청회 개최 - '15.5.11 : 세이프가드 - 1년차 : P980/톤 - 2년차 : P800/톤 - 3년차 : P640/톤
판지	480524,25	세이프가드	'10.6.08	'11.8.11	기타	- '11.8.11 규제시작 - '13.11.29 :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3년 연장 결정 - 1년차 : P1,150.60 - 2년차 : P1,093.07 - 3년차 : P1,038.42
철강제 각봉	721621, 721650	세이프가드	'09.2.19	'09.7.29	철강 및 금속	- '09.7.29 규제시작 - '12.3.10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3년 연장 결정 · 1년차 : P3,901.09 · 2년차 : P3,706.03 · 3년차 : P3,520.73 - '15.3.16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4년 연장 결정 · 1년차 : P3,345 · 2년차 : P3,178 · 3년차 : P3,019 · 4년차 : P2,868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철강제 각봉)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4년 연장 확정
- 동 품목의 경우 2009년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어 '12년 3월에 조치 3년 연장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15년 3월에 다시 관세부과 4년 연장을 결정하고 2015년

7월에 공표함.

– 수입 철강제 각봉에 부과될 추가 관세

. 1년차(2015년 3월 16일~2016년 3월 17일) : PHP 3,345(약 71 달러)/MT

. 2년차(2016년 3월 18일~2017년 3월 19일) : PHP 3,178(약 68 달러)/MT

. 3년차(2017년 3월 20일~2018년 3월 21일) : PHP 3,019(약 64 달러)/MT

. 4년차(2018년 3월 22일~2019년 3월 23일) : PHP 2,868(약 61 달러)/MT

* 2016년 1월 현재 US 1\$=PHP 47.3

[호주]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현재 호주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0건으로, 8건은 규제 시행 중이며 2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건, 화학 제품 1건, 기타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철강제 파이프	7306.30.00 7306.61.00	반덤핑 (우회덤핑)	'15.4.29	-	철강 및 금속	- '15.4.29 우회덤핑 조사개시 - '15.10.13 최종 권고문 발표 예정
아연도금 강판	7225.92.00 7226.99.00	반덤핑 (우회덤핑)	'15.4.22	-	철강 및 금속	- 15.4.22 조사개시 - Bluescope사가 동부를 제소
철근(Steel Reinforcing Bar)	7213.10 7214.20 7227.90 7228.30	반덤핑	'14.10.17	'15.11.19	철강 및 금속	- '14.10.17 반덤핑 조사개시 - '15.9.4 덤핑 예비판정 (한국 9.7~14.3%/스페인 8.2%/싱가포르 6.6%/대만 4.7~8.9%) - '15.11.19 최종판결 . 덤핑마진 : 대한제강 9.7%, 기타 14.3%
열연철강 구조물류	7216.31/32/3 3/40/50,	반덤핑	'13.10.24	'14.11.20	철강 및 금속	- '14.3.14 반덤핑 예비판정 및 잠정관세 부과 :

	7228.70					현대제철 2.2%, 기타 5.3% - '14.11.20 최종판결 . 덤핑마진 : 현대제철 2.52%, 기타 3.24%
풍력타워	7308.20/90 8502.31	반덤핑	'13.8.28	'14.04.16	기타	- '14.4.16 반덤핑 최종판정 및 관세 부과 : Win&P 17.2%, 기타 18.8%
후판 *	7208.40 7208.51 7208.52 7225.40	반덤핑	'13.2.12	'13.12.18	철강 및 금속	- '13.12.19 최종판결 : 동국 제강 18.4%, 기타 20.6% (현대제철, POSCO 제외) - '15.3.31 현대제철 및 POSCO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15.10.12 POSCO, 현대제철 미소마진으로 무혐의 판정
알루미늄도금강판 및 아연도금강판	7210.49 7212.30 7210.61	반덤핑	'12.9.5	'13.08.05	철강 및 금속	- '13.8.5 최종판결 . 알루미늄도금 강판 : 동부제철 5.8%, 유니온 스틸 <2%, 기타 7.7% . 아연도금 강판 : 동부제철: 3.2%, 포스코 9.1%, 기타 28.5% - '14.10.28 재검토 개시 - '15.5월 알루미늄도금 강판 (HS 72106100)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 '15.11.17 일부품목 (7210.49,7212.30) 반덤핑 조치 면제 결정
열연코일	7208.25/26/2 7/36/38/39/5 3/54/90 7211.14/19	반덤핑	'12.6.14	'12.12.20	철강 및 금속	- POSCO 6.0%, 현대 2.6%, 기타 11.8%
PVC 수지	3904.10.00	반덤핑	'12.4.19	'12.10.19	화학	- LG화학 및 기타 3.26%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7306.30 7306.61 7306.69	반덤핑	'11.9.19	'12.07.03	철강 및 금속	- 국제철강 3.2%, 기타 8.9% - 기타 적용국가 :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 '15.5.15 국제철강 반덤핑 면제 판정

(자료원: 호주 반덤핑 조사 위원회)

* 주 : '15.03.31 현대제철과 POSCO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을 기존의 케이스로 통합하여 표기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후판) 2015년 10월 12일, POSCO 및 현대제철의 후판은 최종판결 결과 미소마진으로 무혐의 판정
- (철근) 2015년 11월 19일, 반덤핑 최종판정
 - 대한제강은 9.7%, 기타 업체에는 14.3%의 덤핑마진 결정
- (알루미늄도금 및 아연도금강판) 2015년 11월 17일, 일부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치 면제 결정
 - '15.5월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면제조사 개시
 - '15.11.17 일부제품(7210.49, 7212.30)에 대한 반덤핑 조치 면제 결정

[EU]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EU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4건으로, 4건 모두 반덤핑 규제 시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 제품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722511, 722611	반덤핑	'14.8.14	'15.10.30	철강 및 금속	- '14.8.14 조사 개시 - '15.5.12 6개월간 잠정 반덤핑 판정(잠정관세 22.8%) - '15.10.30 최종판정(확정 반덤핑 관세 22.8%)
철강로프 및 케이블	731210	반덤핑 (우회덤핑)	'09.8.12	'12.2.9	철강 및 금속	- '09.8.12 조사개시 - '10.5.11 반덤핑 판정: 중국산 한국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60.4% 부과(조사 협력 한국 업체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우회덤핑 관세 부과 면제) - '11.9.30 신규수출자 재심 및 '12.6.26 해당없음 판정 (Seil Wire) - '12.2.9 반덤핑 조치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 조치 유지 결정 (우회덤핑 반덤핑 조치 역시 유지) - '13.8.27 신규수출자 재심, 중간재심 및 '14.5.12 해당없음 판정 (Good wire, Line metal) - '15.11.26 신규수출자 재심조사 진행 중(Daechang Steel) * 우회덤핑 규제대상 제외업체는 아래 세부내용 참고 바람
실리콘 메탈	280469	반덤핑 (우회덤핑)	'06.4.20	'10.5.20	화학	- '06.4.20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개시 - '07.1.19 우회덤핑 최종판정(확정관세 49%) - '10.5.20 일몰재심 최종 지속 판정(확정 관세 유지)
철강제 관연결구류	730793, 730799	반덤핑	'01.06.01	'14.12.03	철강 및 금속	- '01.6.1 반덤핑 조사개시 - '02.8.24 최종 판정(한국산 확정 관세율 44%) - '07.8.13 일몰재심 조사개시 - '08.10.1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 - '13.10.15 일몰재심 개시 - '14.12.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18.1.29까지) - '15.2.18 TK Corporation 사에 대해 부분(partial) 중간재심 개시, 현재 조사진행 중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2015년 10월 30일, 반덤핑 최종 판정
 - '15년 5월부터 한국산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잠정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음.
 - '15년 10월 30일, EU 집행위는 관보(L 284)를 통해 한국산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리고, 22.5%의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

○ (철강로프 및 케이블) 신규수출자 재심 진행

- 동 품목은 EU 이사회 규정 No. 102/2012에 의거 60.4%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15년 11월 26일, EU 집행위는 중국 우회수출 규제 대상제외를 위한 신규 수출자 재심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관련 집행위 규정 No. 2015/2179).
- 동 조사는 '15년 9월 7일 Daechang Steel Co. Ltd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관보 공표일로부터 9개월간(즉, 2016년 8월 26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 현재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업체는 총 14개로 업체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보성선재	Bosung Wire Rope Co., Ltd
청우제강	Chung Woo Rope Co., Ltd
씨에스	CS Co., Ltd
코스모와이어	Cosmo Wire Ltd
대흥산업	Dae Heung Industrial Co., Ltd
DSR제강	DSR Wire Corp.
굿와이어	Goodwire MFG. Co. Ltd
고려제강	Kiswire Ltd
만호제강	Manho Rope & Wire Ltd
라인메탈	Line Metal Co. Ltd
세일제강	Seil Wire and Cable
신한제강	Shin Han Rope Co., Ltd
쌍용선재	Ssang YONG Cable Mfg. Co., Ltd
영흥철강	Young Heung Iron & Steel Co., Ltd

(자료: EU 집행위)

II

2016년도 對韓 수입규제 전망

1. 총괄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화학 제품에 대한 규제 지속될 전망

○ 미국 등 선진국 이외에 칠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이집트 등의 신흥국에서도 아시아산 저가제품의 수입규제를 위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여 한국산 철강제품 및 화학,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신규규제 가능성 증대

- 대만 : 한국산 아연도금강판과 중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한 상태
- 멕시코 : 한국산 합금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예정
- 베트남 : 한국산 아연도금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청원서 제출한 상태
- 인도 : 철강제품(장강, 평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한국산 과산화수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예상
- 인도네시아 :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치 청원 움직임
- 요르단 : A4용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예정
- 미국 : 향후 5년간 외국산 철강 수입 금지하는 법안 발의(미네소타 주 하원의원)

□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이외에 수입관세 인상, 각종 수입인허가, 제품인증, 기술규제(TBT) 등의 조치 활용도 증가 예상

- 아르헨티나 : 1400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도(LNA) 시행
- 에콰도르 : 가전 등 2800개 수입제품에 추가관세 부과, 자동차/휴대폰에 대한 수입 쿼타 등
- 우즈베키스탄 : 수입억제하고 자국생산 장려하는 <‘15~’19년 국산화 프로그램> 시행
- 이집트 : 가전, 신발, 주방용품 등 25개 품목에 대해 <수출자 공장등록제> 시행
- 인도네시아 :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항구 지정, 강제인증(SNI) 품목 확대, 할랄 인증 의무화 추진 등

2.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남아프리카 공화국]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남아공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말 현재 총 79건의 반덤핑 조치와 1건의 세이프가드 규제 발동 중
 - 수입규제 대상 1위 국가는 중국으로 29건을 기록함.
 -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11건, 인도네시아 10건, 인도 8건의 규제 발동 중임.
- 2015년 8월, 도금 알루미늄 아연과 컬러코팅 강철에 수입관세 10% 인상
- 남아공 철강업계, 저가 중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조치 요청
 -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을 바탕으로 발전한 남아공의 철강산업이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저가의 중국산 수입증가로 적자가 심해져 생산공장 가동중지, 제품가격인하, 고용인원 감축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업계 1위인 Arcelor Mittal SA를 포함한 현지 업체들이 중국산 수입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요구한 상황임.

□ 통상정책 방향

- 아프리카 동남부 26개국, 단일 경제블럭 TFTA 추진
 - '15년 6월 10일 이집트 엘세이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26개국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COMESA(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EAC(동아프리카공동체),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3개 역내 경제블럭을 2017년까지 통합하기로 합의
 - 단일 블록인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Agreement) 출범 시 역내 관세 자유화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특별히 예상되는 對韓 수입규제 품목 없음.
 - 한국의 對남아공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류 및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대만]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대만에서 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중인 품목은 총 6건으로,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1건 이외에는 모두 중국산 제품임.
 - 해당 품목은 ▶과산화벤조일(시행기간: '10.5.20~'15.5.19), ▶나트륨 포름알데히드 술폭실산염('10.7.16~),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Type I, II and Its Clinker)('11.5.30~), ▶수건('11.12.20~), ▶신발류('12.12.13~'17.12.1),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13.8.15~'18.8.15)임.
 - 관련 URL:
http://www.moeaitc.gov.tw/ITC/main/case/wfrmOurCountryCase.aspx?kind=1&menu_id=68
- (과산화벤조일) 대만 경제부, 규제 연장실시 관련 조사 기한 연장
 - '10.5.12~'15.5.19(5년간) 중국산 과산화벤조일(HS코드 2916.32.10.00.9)에 반덤핑 관세 59.70% 부과
 - '15.5.11일, 대만 재정부 조치종료 위해 조사 실시
 - 제조업체인 育宗企業有限公司는 “2014년 2분기, 시장가격이 前분기 대비 18% 폭락(킬로그램당 2.18달러)했으며, 수입총량 역시 485% 증가(6.6만 킬로그램)”했다고 주장하며 '15년 5월에 규제 연장을 신청
 - '16.1.8일,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 기한 연장

□ 통상정책 방향

- 대만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경제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전망
 - EU, 미국, 터키 등의 국가에서 대만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제소하는 사례 증가
 - 이와 관련, 대만 철강공업협회는 “세계 각국의 對대만 반덤핑 조치는 실제로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많았거나, 중국과 연루된 것”이라며 “중국산제품과 함께 엮여 대만제품 역시 저가저질 상품으로 오인된 결과”라고 밝힘.
 - 최근 대만업체는 각종 무역장벽과 FTA 미체결로 인한 높은 관세 장벽이 수출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 FTA 등 국제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 강화
 - 대만철강업체, 한국산 아연도금강판(HS코드 7212.30)과 중후판(HS코드 7208.51)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
 - * ‘15년 말에 무역조사위원회에 신청 완료한 상태
 - * 아연도금강판은 한국과 중국산을, 후판은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함.
 - 대만 최대 철강업체인 CSC는 ‘15.7.10일자 공상시보에서 “최근 대만내 강철 수입가격과 시장가격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불공정한 경쟁위협에서 대만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힘.

[러시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5년 12월말 현재, 러시아는 총 15건의 수입규제조치(13건의 반덤핑 조치와 2건

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중이며, 4건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임.

- 주요 규제 대상국은 중국(11건 규제 중)과 우크라이나(2건 규제 중, 4건 조사 중)

<발효 중인 수입규제 조치(2015.12.31일 현재)>

유 형	시행일 자	대상국	품 목	HS Code
반덤핑 판정	2011.7.22	Ukraine	Certain steel pipes and tubes	7304, 7305, 7306
반덤핑 판정	2011.10.16	중국	볼 베어링	8482
반덤핑 판정	2012.7.1	중국	칼라강판	7210, 7212, 7225
반덤핑 판정	2013.1.26	India	Graphite Electrodes	8545
반덤핑 판정	2013.5.15	중국	Cold-worked seamless pipes of stainless steel	7304
반덤핑 판정	2013.5.26	중국	Enamelled tubs of cast iron	7324
반덤핑 판정	2013.6.15	Germany, Italy, Turkey	LCV	8704
세이프가드 판정	2013.9.29	중국	도자기재질 주방용품	6911 10
세이프가드 판정	2014.1.1	중국	수확기	8433.51, 8433.90
반덤핑 판정	2015.2.28	Ukraine	Rolling mill-applied forged rolls	8455
반덤핑 판정	2015.4.10	중국	Lemon acid	2918
반덤핑 판정	2015.6.19	중국	Kitchenware and tableware of stainless steel	8211, 8215
반덤핑 판정	2015.9.23	중국	Seamless steel pipes used in drilling and operating oil and gas wells	7304 (7304 22 000 1, 7304 22 000 2, 7304 22 000 9, 7304 23 000 1, 7304 23 000 2, 7304 23 000 9, 7304 24 000 1, 7304 24 000 2, 7304 24 000 3, 7304 24 000 4, 7304 24 000 5, 7304 24 000 6, 7304 24 000 9, 7304 29 100 1, 7304 29 100 2, 7304 29 100 3, 7304 29 100 9, 7304 29 300 1, 7304 29 300 2, 7304 29 300 3, 7304 29 300 4, 7304 29 300 9, 7304 29 900 1, 7304 29 900 9)
반덤핑 판정	2015.12.12	중국	Crawler dozers of up to 250 h.p. in capacity	8429 11 0090
반덤핑 판정	2015.12.18	중국	Commercial vehicle tyres (for trucks, buses, trolley buses, trailers, semitrailers), ranging from 17.5 inches to 24.5 inches in bore diameter	4011 20 100 0, 4011 20 900 0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 2015년 6월 24일, 러시아 정부는 2014년 8월에 시행했던 서방산 농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2016년 8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 수입금지 대상 국가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8개국(한국 미포함)
 - 대상 품목은 육류, 생선, 낙농식품, 채소, 과일, 가공식품 등임.
- 2015년 12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산업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on Industrial and Consumption Waste)’ 변경에 서명, 2016년 1월 1일부터 농업 및 건설용 중장비에 대한 폐차세 부과
 - 중장비 수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폐차세 부과 대상 품목>

motor-driven graders, dozers, excavators, wheeled loaders, road-rollers, self-propelled cranes, pipe-layers, trailers and semi-trailers, forestry-applied machines, agrarian machines (tractors, harvesters, etc.), off-road trucks, etc.

(* 자료원: 러시아 산업부)

□ 통상정책 방향

-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강화 및 확대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간 안전 및 기술 규정 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로, 2015년 12월 31일 현재 총 35개의 유라시아위원회 기술조항이 채택되었음.
 - 중국, 인도, 이집트, 이란, 중국과의 FTA 협의 구체화될 전망
 - * EEU와 베트남간 FTA체결('15.5.29)로 국가간 교역 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전망, 서비스 시장 진출 간소화 등 합의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외 외국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확대 움직임

<EEU외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발표 부서
'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산업통상부
'15.2.5	해외 외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15.11.11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 자료원 : 러시아 산업통상부

○ 수입대체 제조업 육성

- '15년 5월 러 경제부가 발표한 '금융위기대응계획'에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 포함
- 러시아 산업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입대체 분야 선정, 총 3억달러 규모의 '산업개발펀드' 조성, 신규 설비 투자 기업에 대해 低利로 자금 지원 추진 중

□ 수입규제 예상품목

- 2015년 1~11월 기준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 품목 중 분석시험기(MTI Code 8155), 컴퓨터(MTI Code 8131), 반도체집적회로(MTI Code 8311) 금형(MTI Code 7531, 7539) 등이 수출 급증했으나, 특별히 수입규제 예상되는 품목은 없음.

[말레이시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말레이시아의 수입규제 조치는 2012년에 최고조에 달했으나, 2015년부터 점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음.
 - 이는 2015년 하반기에 철강분야 반덤핑 조치가 종결된 건도 있었고,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타결 및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등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입장벽 강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임.
 - 한국 외 여타국가들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의 전체 수입규제 건도 중국/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관세 한 건 정도임.
 - . 칼라코일(HS Code : 7210.70.210, 7210.70.290, 7210.70.900)
- 기타의 비관세조치 동향으로는 화장품/의약품 혹은 의료기기 등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각종 인증 또는 신고제도 등을 들 수 있음.
 - 화장품/의약품 분야에서는 현지 수입상을 통해 제품을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립스틱도 색깔별로 별도 등록을 하게 하는 등 과도하게 세분화시켜 수입 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로 AEC나 TPP 등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며,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제소 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비교적 공정한 판정을 내리고 있음.
-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TPP 발효를 위한 국회 승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26일에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TPP가입 여부에 대한 특별토론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
 -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TPP 승인과 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입규제 자체에 적극적이지 않지만 중국산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철강 및 화학업계에서 정부에 계속 청원하면서 한국산도 함께 제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에 문의가 들어오거나 제소 조짐이 보이는 특별한 산업이나 상품군은 없다고 함.

[멕시코]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멕시코는 정부조달 시장의 경우 자국산 제품에 항상 우선권을 부여함.
 - 정부조달 시장 입찰 방법은 국내입찰, FTA체결국 대상 국제입찰, 개방형 국제입찰 등 세 가지로 분류
 - ▶ 국내입찰

- . FTA를 통해 합의된 양허하한선 이하 금액에 대한 입찰
- . 멕시코 국적 기업만 참가 가능하며, 입찰 시 사용되는 물품은 총 가격 기준으로 50%이상의 멕시코 산 제품 사용을 준수해야 함.
- ▶ FTA체결국 대상 국제입찰
 - . FTA협정에 규정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중 양허하한선 이상의 구매를 시행할 경우 국제입찰로 시행
 - . 참가자격은 멕시코 국적기업, 해당 FTA 국가 기업으로 제한되며, 멕시코 국내산 사용비율 및 원산지 규정은 FTA협정 규정에 따름.
- ▶ 개방형 국제입찰
 - . 특수한 경우에 시행하는 입찰로, 모든 국가의 기업이 참여 가능, 제품 및 서비스 원산지 충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개방형 국제 입찰 시행이 가능한 경우는 하기로 제한
 - .. 해당 입찰의 멕시코 국내 공급업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부조달 협정을 맺은 FTA 체결 국가의 공급업자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경우
 - .. 동일한 입찰 건으로 이미 국내 입찰 또는 FTA체결국가 대상 국제 입찰 실시 결과 적정업체가 부재하거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 .. 국제기구의 재정지원을 받아 연방정부,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의 기관이 입찰을 제시하는 경우
 - 한국은 멕시코와 FTA 체결이 되지 않아, 단독 참가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며,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가 불가피함.
 - . 한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한국산 공급 자재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어, 입찰가 경쟁력 저하로 경쟁사 대비 불리한 입장임.
 - . 이는 표면적인 수입규제가 아니나 한국 업체들의 멕시코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 멕시코에서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건부(Secretaria de Salud)에 제품마다 위생등록을 실시해야 함.
 - 위생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외국 제조품의 경우

수입판매자가 등록 신청해야 함.

- 등록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 중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는 공인번역기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함.
- 공문서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통상정책 방향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영향

- 멕시코 정부는 2015년 11월 7일 정부 웹사이트(www.economia.gob.mx)에 스페인어로 된 TPP협정문을 게시함.
- 멕시코는 99.6%의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예정
 - . 멕시코는 73개 품목과 일부 유제품 쿼터를 제외하고, TPP 발효 첫해에 77%의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5년 내에 3% 추가 철폐, 나머지 20%는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최종적으로 10년 안에 모든 관세를 철폐할 계획임.
 - . 기타 예외항목으로는 설탕에 kg당 0.338달러를 부과하고 커피, 10인 이상의 승합차, 트레일러, 삼륜차 등에 관세 부과할 예정
 - . 코트, 바지, 스포츠의류, 스웨터, 수영복, 양말, 기타 의류 등은 15년에 걸쳐 관세 철폐 예정
 - . 지난 10년간 무관세로 판매되던 미국산 중고차의 경우, 멕시코 산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47.5%의 관세 부과기로 함.
- TPP 당사국간 정부조달시장 자유화 증진기로 함에 따라 TPP 회원국 기업의 멕시코 정부입찰 사업 참여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

○ TPP 협상 타결로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최근의 對멕시코 직접투자가 제조업 특히 자동차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 두드러짐.
- 2015년 포드, 도요타,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등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모델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했음.

- 기아자동차, 아우디 등이 2016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으로 향후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2020년까지 멕시코 경제활동인구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시장 전망 또한 밝은 편임.
-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발효로 멕시코의 자동차 수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합금철) 對한국 반덤핑 조치 예정

- 2015년 11월 20일, Minera Autlan사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불공정 무역조사를 요청하였으며, 멕시코 경제부는 이를 받아들여 합금철(HS 코드 7201.1101)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미국]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미국, 반덤핑 265건 및 상계관세 63건 등 총 328건의 무역구제조치 시행 중

- '15년 12월 기준 미국이 부과 중인 반덤핑, 상계관세는 총 328건으로 이 중 중국이 130건, 인도 23건, 대만 22건, 한국 18건 등 절대 다수가 중국산 제품에 집중
- 미국의 주요 對韓수입규제 제소 품목인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는 161건으로 총 규제 건수의 약 50%를 차지

○ 미국, 국제무역위(ITC)의 산업피해 판정 요소 수정

- '15년 6월 29일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회생 법안과 더불어 통과된 무역조정지원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15)에 개정안으로 포함된 공정무역(Leveling the Playing Field) 조항은 미국 ITC의 산업피해 판정

요소 등 미국의 무역구제 규정을 수정

- 미국 ITC의 무역구제 관련 산업피해 조사에서 미국 산업이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조사대상 기간 동안 실적이 향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할 수 없도록 규정
- 미국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시, 미국 산업의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에만 치중하지 않고 총 수익 및 매출도 고려해야 하며, 미국 업체들의 채무상환 능력, 자산 수익 등도 고려
- 또한, 시장규모를 산정하는 방법도 일부 수정해 시장 내 수입품의 비중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규정
- 미국 언론은 USITC의 산업피해 유효 판정이 용이해지면서 해당 법안의 제정을 미국 철강업계의 승리로 평가

○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에 대한 수사 강화하는 법안 추진 중

-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내 무역구제법집행 부서를 신설하도록 규정
- 해당부서는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활동을 포착하고 관련 항만에 경보 하달하는 역할을 담당
- 상무부는 CBP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타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혐의에 대한 제소가 접수될 경우, 30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발표하고 조사 개시 후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을 각각 90일과 300일 내로 발표
- 상무부가 관세 회피에 유효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적절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 의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철강의원연맹(Congressional Steel Caucus)*이 외국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부터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관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철강 및 관련 산업이 발달한 지역구의 양당 의원들이 미국 철강산업 및 근로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구성된 미국 의회 내 연맹

○ 미국 상원의원, 덤핑 대응 강화하는 법안 발의

- '15년 11월 19일 미네소타 주의 Amy Klobuchar와 Al Franken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외국산 철강의 덤핑으로 미네소타 주의 철강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의 덤핑 대응을 강화하는 무역집행개선법(Trade Enforcement Improvement Act)을 발의
- 해당 법안은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법안 원문은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①특수상황*의 경우 반덤핑 관세 소급적용 기간을 확대, ②미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기 전에 반덤핑 관세를 미리 부과, ③반덤핑 관세 회피 기업 공개 등 임.

*특수상황/응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 미국의 덤핑 관련 조사 개시 이후, 조사대상 기업들이 추후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로 판정 전에 미국으로 해당 품목의 수출을 늘리는 경우

○ 미국 하원의원, 향후 5년간 철강 수입을 중단하는 법안 발의

- '15년 11월 30일 Rick Nolan(민주-미네소타) 하원의원이 향후 5년간 외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철강근로자지원법'(Support our Steelworkers Act)을 발의
- Nolan 의원은 5년 동안 HS코드 2자리 기준 72와 73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의 외국산 철강 및 철강제품의 미국 수출을 금지해 미국 철강산업의 가용율을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

□ 통상정책 방향

○ 미국 행정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미국 의회 비준 추진

- '15년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정책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에 미국 의회가 TPP를 비준하도록 강력하게 설득할 것으로 전망
- 단, '16년 11월 8일에 치러질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이 TPP 비준에 반대하고 일부 의원들은 재협상까지 주장하고 있어, '16년 내 TPP 비준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 미국,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가속화 전망
 - 미국과 EU간의 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은 TPP에 이은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통상 과제로 '16년에 활발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 美 철강제조협회(SMA), ITC에 한국의 철강 보조금 관련 불만 표명
 - '15년 11월 17일 미국 철강제조협회(SMA, Steel Manufacturing Association)의 필립 벨(Phillip Bell) 회장은 미국 ITC의 '무역협정 경제영향보고서'(Economic Impact of Trade Agreements)* 관련 청문회에 앞서 사전성명(pre-hearing statement)을 통해 한국의 철강 보조금을 강하게 비판
 - *미국 ITC는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법안인 '초당적 의회 무역우선사항 및 책임법(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Act)에 따라, 2016년 6월 29일까지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경제영향보고서를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또한, 한.미 FTA의 원산지규정이 역내함유가치비율을 35%로 규정(NAFTA는 62.5%)하고 있어, 중국 등 제3국의 철강이 한국에서 단조로운 공정을 통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비판

[베트남]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베트남은 2015년 12월말 현재 총 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對韓 수입 규제 내역으로 기술한 3건 외에 철강제품(평판압연 스테인리스강, HS 7219.32/33/34/35/90, 7220.20/90)에 대한 반덤핑 규제 1건임.
 - 피제소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임.

- (중고기계) 베트남 과학기술부, 중고 기계·장비·생산라인 수입에 대한 신규 시행령 (Circular No.23/2015/TT-BKHCN) 공포
 - ‘15년 11월 13일에 발표된 신규 시행령에 따르면, ①제조연한(제조일로부터 베트남 수입일자까지의 기간) 10년 이하 ②안전,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측면에서 베트남의 국가기술기준(QCVN), 국가표준(TCVN) 또는 G7국가 표준 중 하나를 부합하는 기계·장비·생산라인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함.
 - 타 부처의 관할 하에 있는 수입 중고장비는 이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장비의 낙후성, 품질불량, 환경오염 유발 등의 이유로 제3국에서 퇴출된 중고장비는 상기 요건의 부합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금지됨.
 - 단, 투자등록증명서 신청 시 수입이 필요한 중고 기계·장비·생산라인 리스트를 함께 제출해 당국의 허가를 받는다면, 상기 조건 부합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함.
 - ‘16년 7월 1일부로 발효 예정
- (자동차)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육성 및 세원 확보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가 규정한 사치품목인 자동차에 높은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수입관세) 베트남의 對韓 수입관세율은 승용차 부문 74~78%, 화물운송 차량부문 0~65%를 적용
 - (중고차량) 베트남 정부는 중고차량 수입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 중고차량의 관세를 대당 5천 달러, 배기량 1000~1500cc 차량은 대당 1만 달러로 절대 수입관세를 적용함.
 - (특별소비세)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는 45%, 2,000cc 초과 3,000cc 이하는 50%, 3,000cc 초과는 65%의 특별소비세를 부과
-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2015년 11월 17일, 베트남 재무부는 자국이 체결한 각종 FTA 특별우대세율 중 자동차와 농기계 일부(트랙터 등) 부분품과 부속품에 적용되는 수입세율 조정안을 유관 부처 및 협회에 전달, 현재 의견을 검토 중임.
 - 아세안자유무역협정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역내 생산 완성차의 베트남 수입관세가 ‘18년 부로 완전 철폐될 예정
 - 이에 존폐 위기에 몰린 베트남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구제책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관

세 인하 및 조기 철폐 안이 제기된 것임.

- 이번에 제안된 24개 관세 조정 품목 가운데 한-베 FTA의 관세가 하향 조정된 품목은 20개로 이 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 (농산물)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베트남의 농산물 검역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산 농산물의 베트남 수출이 일부 제한되고 있음.
 - 2015년부터 “수입 전 병충해 분석을 위한 식물검역 대상 목록(Circular No. 30.2014)” 및 “수출입, 중개 및 수입이후(Post-import) 식물검역에 관한 절차규정(Circular No. 33.2014)” 시행
 - 상기 규정에는 검역을 조건으로 수입 가능한 식물 목록이 첨부돼 있는데, 목록에 없는 한국산 식물은 베트남으로의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
 - 수정 재배된 한국산 딸기의 경우 위험성 평가 작업이 완료되어 2016년 2월 1일부터 수입이 가능해짐.

□ 통상정책 방향

- (경제여건) ‘15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최근 8년 중 최고치인 6.68%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3년 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 무역수지 적자는 세계 경제 회복 둔화에 의한 수요 감소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 및 베트남 국내 수입 증가에 기인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 ‘15년에 TPP 및 베-EU FTA 협상 타결에 성공했으며, 전년도에 타결된 한-베 FTA도 ‘15년 12월 20일부로 정식 발효
 - TPP 최대 수혜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베트남은 TPP 효과로 수출 증가, 투자환경 개선 및 외자유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TPP 최대 수혜업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을 포함한 많은 해외기업들이 원사·직물 부문에서의 투자(신규/확대)진출을 진행 중
- (수입규제조치) 자국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구
 - ‘15년 베트남 국내에서 개최된 각종 세미나에서 베트남 유관 기관장들은 해외에서

의 무역구제조치 피소건수에 비해 자국 기업들의 무역구제조치 제소건수가 저조함을 지적하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자국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활용제고를 촉구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비료) ‘15년 베트남의 비료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현지 업계의 우려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베트남의 주요 비료 수입국은 중국으로 중국산 비료의 수입액 점유율이 약 47% 달하는 상황지만 ‘15년에는 중국 이외 국가들로부터의 비료 수입액 역시 급증해 유관 기관 및 협회에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 ‘15년 비료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가율: 인도네시아 6배, 말레이시아 2배, 라오스 71.4%, 한국 26.3%, 벨기에 30%
- (아연도금) ‘15년 12월 24일, 베트남 국내 아연도금제품 생산 4개 기업이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산 아연도금제품(HS Code 8자리 기준 42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치 요청 청원서를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 산하 수입규제 조사기관)에 제출, 현재 반덤핑 조사 개시여부 검토 중

[브라질]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5년 12월 말 기준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50개 품목에 대해 규제가 적용 중임.
 - 브라질 정부는 생활소비재부터 전자재, 화학제품 등 다양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5월-10월 사이 브라질 정부는 9건의 무역보호 조치를 실시, 동기간 10건의 조치를 단행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다음으로 보호 무역주의

가 심한 국가로 평가됨.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2015년 말까지 브라질은 평균 17일마다 1건의 무역보호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2015년 한 해 동안 글로벌 경제 침체로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50% 이상 하락, 수입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 규제도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브라질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될 경우, 중국 제품을 대상으로 덤핑 혐의 조사 시, 중국 국내시장 유통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덤핑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 브라질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음.
- EU도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토론 중임. ‘Le Figaro’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을 경우, 유럽의 섬유, 전자, 광학 산업 분야에서 수백만 명이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EU의 결정은 브라질 정부의 향후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통상정책 방향

- (경제 여건)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6년도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3% 하락, 인플레이션은 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5년 브라질 GDP 성장률은 -3.7%, 물가상승률은 10.7%로 1990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함.
 - ‘15년 12월 기준 브라질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5.1%로 최근 수년간 상승세를 지속. 중앙은행은 ‘16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15년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는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junk)으로 강등
- (무역 동향) 브라질의 ‘15년 수출액은 1911억 달러, 수입은 1714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197억불 흑자를 기록함.

- ‘15년 2월까지만 해도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3월부터 수출이 점차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섬.
- 비록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했으나, 12월 기준 연간 누적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2%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25%나 감소하여, 브라질 경제가 활력을 잃었음을 입증하는 ‘불황형 흑자’를 의미함.
 - * 동기간 수출 15%감소, 수입 25.1% 감소
- (통상 정책) 브라질은 대통령 탄핵 추진, 대형 비리 스캔들 등을 비롯한 정치 혼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교역 국가들과 무역협정 체결 강화 및 협상 내용 다변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구사한다는 방침임.
 - TPP의 등장과 메르코수르의 규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글로벌 무역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국제통상협력 확대를 추진
 - 기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면제 품목을 추가하고, 신기술 및 친환경 관련 제품의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간의 보호무역 정책에서 다소 탈피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 브라질은 멕시코, 캐나다, EU와의 FTA 협상에서 공공조달, 서비스, 투자보호 등 협상 대상을 확대하고 다변화할 전망
 - * 브라질 정부는 침체된 국내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판매 개선을 위해 ‘15년 12월에 우루과이와 자동차 FTA를 체결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현재 브라질 정부가 덤핑혐의로 조사 중인 한국제품은 타포린(3921.90) 1개 품목으로 향후 수입규제 대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및 중국산 타포린 제품 수입이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브라질 현지 생산업체 Sansuy(제소업체)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15년 브라질의 對韓 수입 총액이 전년대비 36% 감소한데다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전기전자 부품, 완성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

문에 현재로서는 브라질 정부의 對韓수입규제가 특별히 예상되는 품목은 없음.

[아르헨티나]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5년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수입모니터링시스템(SIMI) 도입 운영
 -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외화유출을 막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2012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전면 폐지하지고, 수입 모니터링 통합시스템(SIMI)를 12월 23일부터 전격 시행함.
 - *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는 2012년 1월부터 발동된 수입규제정책으로,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국세청(AFIP)에 신고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수입규제정책으로 일본, 미국 및 EU의 WTO 제소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하도록 함.
 - SIMI 시스템은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을 통하여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수입허가가 나오는 1)자동허가제(LA, Licencia Automatico)와, 각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2)비자동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o)로 나뉘는 단순한 메카니즘임.
- 자동 통관 개념인 자동허가제(LA)는 10일 이하의 심사기간과 90일의 유효기간을 지니고 하기와 같은 등록정보가 필요함.
 - 등록정보 : 수입업체 법인 및 대표명, 사업자등록증(CUIT), HS코드번호, FOB단가 및 FOB 총액(수출국 통화), FOB 총액(달러), 원산지, 물량 및 종류, 총개수, 브랜드, 모델명, 제품상태, 원산지 및 경유지
 - 수입협회(CIRA)에 따르면 자동허가제의 90일 유효기간은 유연하여 연장도 가능하다고 함.
- 수입허가제도(LNA)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00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해 각 정부부처 및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자동허가제(LA)와 달리 60일 이하의 심사과정을 거치며, 90일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는데, 허가를 받고 90일 이내 통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처리됨.
- 수입허가가 필요한 제품의 SIMI 시스템 등록서류는 품목군 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HS코드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통관 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 수입제품을 검사하여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수입을 불허함. * FOB 단가 5%, 수량 4% 이상 차이나는 경우
- 예외 : 샘플 및 아르헨티나 최남단 자유무역지대(Tierra del Fuego) 생산 제품

□ 통상정책 방향

- 2015년 12월 10일 취임한 Macri 대통령은 자유시장주의와 개방경제를 표방하며 친시장주의 경제개혁을 추진 중임.
 - Macri 신임 대통령의 정책 목표는 재정적자축소, 외환보유액 확대 및 대외신임도 제고 등임.
 - 2015년 12월 17일, Macri 신정부는 수출 경쟁력 제고와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4년 만에 외환시장을 개방하여 환전, 외환송금 자유화 등의 조치를 취함.
 - 그동안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던 공시환율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30% 상승)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수준으로 상승되는 등 환율시장도 더 이상 급격한 변동없이 보합세를 유지중임.
- Macri 신정부는 국제 금융시장 복귀를 위해 벌처펀드(Vulture fund)와 현실성 있는 협상을 통해 기술적 디폴트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7월 디폴트소송에서 패소한 뒤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협상도 벌이지 않아 현재 기술적 디폴트상태에 놓여 있음.
 - 신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해 2020년 만기의 달러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벌처펀드와의 협상안을 2016년 1월 25일 공식 제시할 예정임.
 - 정부의 외환시장 개방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고, 기술적 디폴트가 해결되면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로의 투자는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수입허가제(LAN) 대상인 품목은 모두 수입규제 대상이며, HS 코드별로 제출 자료가 상이하므로 사전주의 요망됨.
- 수입허가제(LNA) 대상 품목은 주로 섬유(원사, 원단, 의복), 가전제품, 철강제품, 장난감 등에 집중되어 있음.
 - * 종이, 봉지, 봉투, 박스, 공책, 달력, 포스트 카드 등
 - * 전자제품 : 난로, 오븐,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다리미, TV, 음향기, 소규모 가전제품 등
 - * 장난감
 - * 신발(일반)
 - * 모터사이클
 - * 카펫, 접퍼, 셔츠, 자켓, 기타 의류
 - * 타이어
 - * 가방류
 - * 철강제품 : 철사, 튜브 및 관, 튜브 액세서리, 식기류, 손공구, 보일러, 온수기, 산업용 오븐, 크레인, 유압잭, 승강기, 농업용 기계, 철로, 스크류, 너트 및 볼트 등
 - * 면, 양모 및 인조 원료의 원사 및 원단
 - * 화학제품, 목재, 유리제품, 테이프, X-Ray장비, 비중계(온도계, 기압계), 타이머, 현악기, 가구 및 부품, 침대, 전등, 라이터 및 점화기 등
 - * 자동차

[에콰도르]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
 -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2015년 1월과 3월에 섬유기계, 식품제조기계, 인쇄기계 등 기계류 588개와 전자제품, 과일, 육류, 건축자재 등 약 2800개의 수입제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였으며, 이 제도는 15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임.
 - * 588개의 기계에 대해 5~15%의 관세율 부과 또는 인상
 - * 2800개의 수입제품에 관세 5~45% 추가 부과

- * 재봉틀, 절단기기, 다림질기기, 세탁기 등 28개의 제품에는 5~15%의 관세가 부과되며, 가전 완제품이나 CKD 제품(조립제품)의 경우에는 20~30%에 달하는 기존 관세에 추가관세가 포함돼 적용됨.
- * 특히 텔레비전,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전자레인지 등은 이전에 적용된 관세가 30%였으나, 45%가 추가되면서 총 75%의 높은 관세를 지불하게 됨.

○ '15년 11월, 세이프가드 단계적 철회계획 발표

- 에콰도르 정부는 '15년 11월 9일, WTO의 국제수지위원회(Committee on Balance of Payment Restrictions)에 무역수지 보호를 위해 실행된 세이프가드(관세인상)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계획표를 제출하였음.
- * 4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약 1,390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16년 1월부터 40%만 적용
- * 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725개 제품에 대해서는 '16년 4월부터 세이프가드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추가관세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될 예정임.

추가관세 비율(%)	2016년 4월 적용비율(%)	2016년 5월 적용비율(%)
15	10	5
25	16.7	8.3
40	26.7	13.3

- 이어서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15년 12월30일에 엘니뇨(El Nino)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장치 및 기계에 필요한 129개 제품의 경우에는 '16년 1월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힘.

○ 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터 조치 연장

-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지난 1월 6일 2016년 승용차 수입쿼터를 전년대비 9% 감소한 2만23285대로 확정 발표했음.
- 금액기준으로는 총 2억8068만927달러로, 쿼터를 부여받은 수입업체는 자동차 대수 혹은 수입액 중 하나가 찰 경우 추가수입이 불가능함.
- CKD 자동차 수입의 경우 쿼터액은 약 3억5900만 달러이며 쿼터량은 약 5만8800대임. 또한, CKD 생산을 위한 차대 수입 쿼터액은 1580만 달러이며 쿼터량은 2403대임.
- 전년과 달리 수입업자별 쿼터량을 배정하지 않고(동 조항 삭제), 전체 쿼터량만을 배정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확대될 여지가 있음.

- * 2012년 자동차 수입쿼터가 도입된 이후 한국산 자동차의 對에콰도르 수출규모는 지속 감소 중임.

○ 휴대폰에 대한 수입쿼터 조치 연장

- 디에고 아올레스티아 에콰도르 대외무역부(COMEX) 장관은 '16년 1월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2016년도 휴대폰 쿼터액이 전년보다 3800만 달러 증가한 2억5천만 달러이며, 쿼터량은 260만대라고 밝힘.
- 2016년 휴대폰 분기별 쿼터액 및 쿼터량은 다음 표와 같음.

	쿼터량(대)	쿼터액(FOB, 달러)
1분기	559,791	50,115,160
2분기	801,609	74,242,826
3분기	517,594	52,614,842
4분기	784,768	73,027,172
총	2,663,762	250,000,00

○ 안데안공동체 회원국에 대해서도 수입관세 인상

- 2014년 12월 29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에콰도르 통화인 미 달러화 대비 안데안공동체 회원국 통화의 평가절하로 에콰도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형태로 수입관세 추가 조치를 도입하였음.

〈2014년 콜롬비아, 페루의 화폐가치 현황〉

화폐 단위	7월	12월	평가절하
콜롬비아 - 페소(peso)	1,872	2,340	25%
페루 - 솔(sol)	2.79	2.95	5.4%

(*주: US\$ 1달러 기준 / 자료원: El Comercio)

- 안데안공동체 사무국은 에콰도르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카르타헤나협정 제98항에 의거 회원국 통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경제타격으로 적용가능한 조치'이지만,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데스공동체 사무국의 동의가 필수라고 지적함.

*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는 경제블록인 안데안공동체 회원국으로 역내에서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음.

- 안데안공동체 사무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는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2013년 재선에 성공한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의 차관도입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 2014년에는 8년만에 국채 재발행을 단행하였으며(20억달러 규모), 2015년에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여 총 7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였음.
- 에콰도르-EU간 FTA 2016년 하반기 발효 목표
 - 에콰도르 정부는 2014년 EU와의 FTA 협상을 본격 추진하여 2015년 7월 17일에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 발효를 목표로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협상 개시
 - 에콰도르 정부는 2015년 8월 25일에 개최도니 한.에콰도르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SEC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음.
 -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에콰도르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체결하는 무역협정이 될 것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15년 1월과 3월에 이루어진 에콰도르 정부의 수입관세 인상으로 한국의 對에콰도르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부품, 섬유기계, 화학기계 분야에 타격이 있었으나, 오는 6월에는 동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對에콰도르 수출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됨.

[요르단]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에너지 라벨링) 2014년 7월 1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램프 등 가전 기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을 의무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 (정부조달) 공군, 민방위, 보안군, 군 병원 등의 정부부문 입찰가능 국가를 특정 선진국으로 제한함에 따라 한국산은 제외되어 차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조달 입찰시 요르단 현지기업에 가격부문 15% 어드밴티지를 제공
 - 요르단은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 현재로서는 요르단 정부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정도만 가능

□ 통상정책 방향

- 2015년 3월 1일부터 요르단에 수입되는 신재생 에너지 품목은 관세와 판매세를 면제함. 동 조치로 현재 약 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품목 수입은 2015년내 7%, 2020년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조달 입찰시의 차별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비관세장벽이 없을 정도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통상규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A4용지) 요르단 정부는 2014년 8월 28일에 A4용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업계의 의견을 조사 중이며, 세이프가드적용 여부는 2016년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동 품목에 대해 현지 시장점유율 3% 이상인 국가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적용 예정이며, 한국은 동 품목에 대한 요르단 시장점유율이 2% 미만이므로 동 수입규제

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시장점유율이 3%를 초과하면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상적용국가 :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브라질 등

[우즈베키스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수입상품 관세 인상 및 소비세 부과체계 도입

- '15.7.1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크라이나 수입 상품의 전 품목에 5%~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5.9.1부터는 대통령령에 의해 수입 상품에 대해 새로운 수입관세 및 소비세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세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관세의 경우 육류, 과일류 등 식품류부터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무와 같은 화학/고무제품, 철/비철금속 및 기계/설비에 이르기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입품 27개 분야에 대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 제 62류 및 제 87류에서 각각 6개 품목이 변경되었고, 제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 72류(철강) 및 제 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에서 각각 5개 품목이 변경되었음.
- 소비세의 경우 육류, 견과류 등 식품류부터 폴리에틸렌, 조명기구에 이르기까지 6개 분야의 수입품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

□ 통상정책 방향

○ 일반 소비재 등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생산을 장려하는 『'15년~'19년 국산화 프로그램』 적극 시행 중

- '15.3.4에 “2015~2019 생산구조 개혁 및 현대화·다변화 프로그램” 대통령령 승인
- 국산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품목을 현지 생산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해당 품목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산과 중국산 화물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는 『'15년~'19년 국산화 프로그램』

램』 강화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국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화물차 이외에 현재 특별히 예상되는 수입규제 품목은 없음.

[우크라이나]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외적으로 수입규제 보다는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이 당면 최대 과제이나, 러시아의 크림 반도 강제 합병,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 및 EU-우크라이나 간 자유무역지대협정(DCFTA) 체결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금수조치, 반덤핑 조치 등을 통한 상호 제재 조치가 확산되고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EU-우크라이나 자유무역지대협정(DCFTA) 발효로 양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 기대
 - 2016년 1월 1일부, EU-우크라이나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발효
 - * EU는 우크라이나 대외 수출비중의 약 3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지역
 - * EU는 우크라이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 파트너
 - 우크라이나는 향후 10년에 걸쳐 EU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단계적 폐지 예정
 - EU는 우크라이나의 단계적 관세철폐를 용인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EU 산업표준에 맞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
 - * EU 표준에 맞추기 위한 각종 법제개혁 및 산업시설 현대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

- 우크라이나의 탈 CIS 움직임에 따른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라
 -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친 서방 행보가 러시아의 경제, 정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 이에 러시아는 그 동안 우크라이나의 친 서방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내전 등에 개입하는 등 정치,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음.
 - 그러나 최근 EU-우크라이나 간 FTA가 예정대로 체결되는 등, 탈 CIS 움직임을 가속화하자,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 * 2016년 1월 1일부,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선언
 - * 2016년 1월 1일부, 우크라이나산 주요 농식품 (고기·생선류, 유제품류, 음료류, 가공식품류, 제과류, 분유류, 면류, 가공육류, 주류, 사료류, 담배류)에 대한 금수 조치 발효
 - 반대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의 FTA 중단 선언, 러시아산 제품 일부에 대한 금수 조치 발효.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향후 GDP의 0.9%인 9억 달러의 손실이 불가 피할 전망이다.

□ 수입규제 예상품목

- 2015년 1~11월 누적 기준,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수출 실적은 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3% 감소하였음. 이는 주요 수출품목(승용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가전 제품 등)의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수입규제 예상되는 품목 없음.

[이스라엘]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이스라엘 정부는 2015년에 총 3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를 종료하였음.
 - 이탈리아산 Stretch Wrap(Hs code: 3920.10, 3919.90): 2015.04.15. 종료
 - 북 아프리카산 Rubber Procured Trends(Hs code: 4012.90, 4008.29, 4006.10)

2015.03.20. 종료되어 재조사 논의 중

- 터키산 Stretch Wrap(Hs code: 3920.10, 3919.90): 2015.04.15. 종료

○ 이스라엘은 2015년 저철분 유리(HS code: 7005.29)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업계의 의견을 조사 중에 있음.

- 예상 적용국가 : 터키

□ 통상정책 방향

○ 이스라엘의 고물가 현상 해결책으로 식품수입 통관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현지 구매보다 저렴한 해외 온라인 쇼핑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임.

- 건조식품(파스타, 비스킷, 쌀 등)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허가 절차를 수입업자의 '제품 안전성 및 규정 준수' 관련 서류로 대체

- 이스라엘 재무부는 '14년 해외 온라인 구매 무관세 인정 수입 한도액을 325달러에서 500달러로 확대

○ 이스라엘 정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 유럽국과의 수출입 하락세에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중

- 2015년 11월, 파나마와 FTA 협상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말에 발효될 전망

-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중국과 인도와의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 협상도 희망하고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특별히 예상되는 對韓 수입규제 품목은 없음.

[이집트]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이집트는 현재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에 따라 가금류를 포함하여 총 9개 품목은 수입 금지,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 필요, 중고 제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가능하다고 명시한 13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 2015년 12월, 이집트 산업부는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보유한 25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자 공장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등록이 되지 않은 공장 생산품에 대한 수입은 불허하겠다고 밝혀 해당 조치로 인한 한국기업의 對 이집트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가전제품, 신발류, 주방용품, 가구, 섬유제품, 화장품 등 25개 품목 대상
 - 해당 품목 제조 공장이 이집트 수출입청 (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 GOEIC)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이집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
 - 해당 조치는 2016년 3월 1일부터 발효 예정

□ 통상정책 방향

- 이집트는 한때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던 관광산업이 정정불안, 테러 발생 등의 직격탄을 맞아 외환 보유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외환보유고가 이집트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어 외환 보유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통화 암시장 체결 등)
- 이집트 정부는 연간 4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수입품의 수입을 억제, 2016년에만 최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재 수입을 줄이겠다고 발표, 이집트 정부의 이런 의지는 각종 수입규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수입규제 예상품목

- 對한국 수입규제와 관련된 특이 동향은 없음.

[인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인도는 2011년 기존의 수입규제를 전면 철폐한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이외에 특별한 수입규제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개방적인 편임.
 - 그러나, 실제 세관에서의 통관 시 규제적용의 모호성, 인증취득 시 인증기관의 절차상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인도의 주요 수입규제 품목 및 인허가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인도의 수입금지 품목은 주로 동물의 고기, 유지 등으로 총 60개
 - 인도식품공사 등 특정 기관을 통해서만 수입 가능한 수입 전매 품목은 대두, 요소(비료), 밀, 메슬린, 팜스테아린, 금은 등으로 총 22개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 시행에 따라 강제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총 92개
 - * 해당품목으로는 식품색상/첨가물, 포장용기, 분유, 연유, 타이어, 철강제품 등
 - 인도중앙의약품 표준규제기관(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을 통해 80여개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모든 수입 화장품에 대한 의무 등록절차 시행 중
 - 2014년 4월부터 인도무선통신사업부(WPC, Wireless Planning and Coordination Wing)는 수입 무선통신장비에 대해 ETA(Equipment Type Approval) 인증을 의무적으로 시행 중
 - * 특정 저주파수에 해당하는 무선통신장비의 경우 의무 인증 예외
 - 인도의약품 규제청(DCGI, Drugs Controller General of India)은 2015년 7월부터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을 수입금지하기로 발표함.

* 2014년 11월 12일 이후 전세계적으로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상당한 벌금과 라이선스가 3-10년간 취소되는 페널티 부과 예정

□ 통상정책 방향

- 2015년 4월 1일, 2015-2020 대외통상정책 발표
 - 인도 상공부는 재화, 용역 수출 시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여 재화 및 용역 수출을 증진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5개년 대외통상정책을 발표하였음.
 - 이번 정책은 크게 재화 수출 제도, 서비스 수출 제도, 수출 유공업체 제도, 수출 촉진용 자본재 제도로 나뉘며 인도 수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함.
 - 또한, 무역원활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한 ‘서류 없는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서명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수출입 관련 신속한 승인을 위해 부처 간 온라인 회의를 도입했으며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메카니즘 구축
 - 위의 계획들은 결국 ‘메이크 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계획 기조에 맞추어 인도를 제조 허브화, 수출 거점화로 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무선통신기기) 2015년 하반기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에 수입이 급증했던 무선통신기기 제품은 2015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인도 업계의 견제가 예상됨.
- (철강제품) 2014년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였던 철강판의 경우, 2015년 이후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액이 하향세로 들어섰으나, 인도 내 철강업체들의 요구와 인도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경향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및 세이프가드 발동이 우려되는 상황임.
 - 중국, 러시아 등 비FTA 체결국에 대한 보호조치가 한국, 일본 등 FTA 체결국에

대해서도 확대되는 상황

- 장강(long steel), 평강(flat steel) 외 일부 스테인리스 품목에 대한 인도 철강업체의 보호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 (과산화수소) 2015년 9월 11일, 인도 상공부는 한국과 방글라데시, 대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과산화수소(HS 2847)에 대해 반덤핑 조사 실시 예정임을 밝힌 바 있어, 우리 업계의 사전준비가 요망됨.

〈인도의 對한국 수입통계〉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별	2014		2015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782,490	12.4	12,031,152	-5.9
1	무선통신기기	1,531,347	25.9	1,508,648	38.6
2	철강판	1,088,141	174.6	1,474,422	-3.7
3	자동차부품	1,064,542	-14.9	1,176,933	10.6
4	합성수지	1,058,193	15.6	951,667	-10.1
5	석유제품	738,646	20	471,577	-36.2
6	기타석유화학제품	499,765	21.1	358,297	-28.3
7	반도체	338,244	114.8	313,420	0.8
8	금형	282,208	26.7	289,075	2.4
9	금은 및 백금	441,663	-30.2	271,152	-19.8
10	종이제품	310,861	41.9	243,173	0.3

(주: 순위는 2015(1~12월 기준) / 자료: 무역협회, MTI3단위)

[인도네시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규제 강화
 - ‘14년 2월에 발표된 신무역법에 따르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의 수출입 물량 및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

- (수입허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법 및 시행령 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수입업체에 대한 심사를 강화
- (세이프가드) 인도네시아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산업원자재 성격을 가지는 제품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강화

- (SNI인증 의무품목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국가표준(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제한하고 있음.
- (인니어 라벨규정 강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국산 품수입품)에 인니어 라벨 부착 의무화를 추진
- (할랄 인증 의무화) 할랄 제품인증법의 시행(2019년 정식 발효 예정)으로 지정 품목에 대해서 할랄 인증 여부를 명기해야 함.
- (전자제품 TPP 필수 취득) 핸드폰, 핸드헬드, 태블릿 PC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라이센스를 사전취득하고 산업부의 등록허가(TPP-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또한 정보통신부로부터 통신장비 인증서도 받아야 하는 등 전자제품에 대해 비관세 장벽 강화 추세
- (선적전 검사) 일부 지정 품목에 대해 수입자 비용부담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 선적전 물품 확인 요건을 부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으로는 섬유류, 식품류 등 7개 수입 상품군이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선적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통관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이 우려
- (비자동수입허가절차) 인니 정부는 식품, 화장품, 건강 보조 제품, 장난감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해 무역부가 지정한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고 있음. 선정된 등록 수입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면제해주기도 하지만 자격승인 절차가 모호하고 부정확한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원예작물의 경우, 인니 농업부로부터 원예작물 수입 권고를 받은 수입자만 수입이 가능하고, 무역부에 수입자로 신청/등록한 후 개별 제품에 대해 RIPH 증명서와 수입자 지정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함.

□ 통상정책 방향

○ ASEAN 경제공동체(AEC) 출범

-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역내 무역비중이 25.6%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역내 무역비중이 높기 때문에 AEC 출범에 따른 역내 무역비용 감소로 큰 수혜를 볼 국가 중 하나임.
- RCEP 참여 및 AEC 출범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도로, 철도, 항구 등의 물류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 FTA 및 지역무역협정 적극 추진

- 한-인니 CEP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무역협정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입장
 - * '14년 11월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인니가 TPP, FTAAP 등의 협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
- '15년 10월 TPP협상 타결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TPP가입국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비해 자국 대표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시장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
- 인니 정부는 주력산업군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2~3년내 미국, EU와의 FTA 및 CEPA, TPP가입을 추진할 것이라 공식적 발표

○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

- '14년 4월말에 개정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일부 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였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산업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됨.
 - * 전자제품, 신발, 섬유, 장난감 및 음식 등의 소비재를 판매하는 유통점포 운영(온라인 포함)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 * 물류, 창고업 및 냉장보관업은 외국인 투자 가능한 지분을 기존 100%에서 33%로 축소,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가 95%에서 100%까지 가능했던 해상 유전 및 가스전 드릴링, 파이프라인 건설과 유전, 가스전의 Q&M, 엔지니어링, 기술검사 등은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로 지정
 - * 전력 설비 가설 분야와 통신망 및 인터넷이나 우편을 사용한 소매업 또한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이며, 복사, 제본, 사무지원 서비스, Alternative trading 등도 내국인만 가능함.

○ 자국문화 보호를 위한 외국 기업 제한

- 영화필름과 광디스크 생산기계에 대한 수입규제 중이고 민영방송과 케이블 방송사의 외국인 지분 허용은 최대 20%이며, 외국방송 재송신에 대한 규제도 엄격함.

- * 외국방송 재송신 시 인도네시아 국내에 송신권을 보유한 위성만 사용가능함.
- * 인니 멀티플렉스를 위탁경영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 업계2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은 10%밖에 안 되는 등 외국기업 합작투자도 제한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 석유화학제품)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산업원자재 성격을 가지는 제품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조치 강화 추세임.
- (PET) 인도네시아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제조업체가 지난 2014년에 이어 2015년 12월에도 PET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청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PET 수입량이 최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현지 제조업체들이 수입량과 수입가격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므로 우리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망됨.

[일본]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WTO 출범(1995년) 이후 일본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총 9건임.

〈WTO 발족 이후 일본의 반덤핑 조사 건수 추이 (2015년 6월말 현재)〉

연도	2001	2007	2012	2014	2015	합계
건수	2	4	1	1	1	9

※WTO가 발족한 1995년 이후에 조사가 행해진 적이 없는 해는 표에서 제외

*자료원 : WTO 웹사이트 「anti-dumping」 Anti-dumping initiations: by reporting Member

- 일본의 반덤핑 제소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최근 들어 일본정부는 수입규제 조치 활용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음.
 - 과거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WTO 보다 엄격한 기준을

- 고수해 반덤핑 조사 개시를 어렵게 하는 등 특별한 규제조치 활용에 소극적이었음.
- 그러나 아시아 신흥국 급부상으로 2011년 4월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가이드 라인」 개정을 통해 제도의 개시 요건을 완화하였음.
 - 이에 따라 반덤핑 등 특수관세 발동 신청이 용이하게 되었으므로 반도체, 철강, 섬유 등 대일 수출량이 비교적 큰 산업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됨.

□ 통상정책 방향

○ 일본의 교역 현황

- (수출) 2015년 하반기(7월~11월) 일본의 수출은 약 31조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를 기록, 상반기 보다 수출증가율 감소
 - * 중국의 경기침체가 큰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미국의 경기확장과 유럽의 완만한 경제회복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연간 수출규모는 69억 엔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 예상
- (수입) 2015년 하반기(7월~11월) 일본의 수입은 약 32조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를 기록, 상반기 보다 수입증가율도 감소

〈일본의 수출입 추이〉

			2012	2013	2014	2015 (1-11월)	2015 (7-11월)
수 출	對세계	금액(10억 엔)	63,747	69,774	73,093	69,294	31,486
		(전년동기비 증가율 %)	△2.7	9.4	4.7	4.6	1.0
	對한국	금액(10억 엔)	4,911	5,511	5,455	4,907	2,129
		(전년동기비 증가율 %)	△6.7	12.2	△1.0	△0.9	△7.3
수 입	對세계	금액(10억 엔)	70,688	81,242	85,909	72,266	32,724
		(전년동기비 증가율 %)	3.7	14.9	5.7	△7.7	△8.2
	對한국	금액(10억 엔)	3,233	3,493	3,531	2,975	1,293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	8.0	1.0	△7.6	△11.6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일본의 통상 정책

- 아베 정권의 통상 정책 기조는 특정 분야·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수출 확대임.
-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TPP로 대표되는 ‘FTA 확대 전략’, 지방 창생을 근간으로 하는 ‘농수산물 수출 확대’, ‘인프라 시스템 수주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시장 확대’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은 TPP 대표 참가국으로 빠르면 2017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를 주도하고 있기에 자의적인 수입규제를 실시할 가능성은 극히 적은 상황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최근 한국의 對日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특별히 수입규제 대상이 될 만한 품목은 없음.
- 2015년 한국의 대일 수출은 25,596백만 달러, 전년 대비 20.5% 감소하여 4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

[잠비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잠비아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로 2015년 7월 10일 도금강판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및 잠정조치(180일간)를 발동

□ 통상정책 방향

- 아프리카 동남부 26개국, 단일 경제블록 TFTA 추진
 - '15년 6월 10일, 이집트 엘세이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26개국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COMESA(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EAC(동아프리카공동체),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3개 역내 경제블록을 2017년까지 통합하기로 합의
 - 단일 경제블록인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Agreement) 출범 시, 역내 관세 자유화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특별히 예상되는 對韓 수입규제 품목 없음.

[중국]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환경·건강·안전 제품관련 수입규제 강화 추세
 - 중국 국가발전위원회(NDRC)는 '14년 9월 1일부터 저품질 석탄 수입 금지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15년 1월 18일 신선우유에 이어 저온살균 과정을 거친 조제우유도 검역검사 범위에 포함, 유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기존에 '검역허가증'이 필요한 유제품은 생유와 생유제품, 신선우유 등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15년 8월 1일부터 '휴대용 전자제품용 리튬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유닛 안전요구' 시행, 안전성 관련 문제제기가 되어온 휴대용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 '15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 新 '식품안전법'은 수출입식품 안전에 관해 더욱 엄격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15년 10월 29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출입식품 안전관리감독 시스템을 한층 보완·강화한다고 발표
-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가공무역 제한조치 강화
 - 기존 중국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에 따른 제조업 발전정체, 환경오염 등 문제가 본격화 되면서 최근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 강화
 - * 가공무역에 대해 시행하던 증치세 환급 및 관세 면제 등의 조치를 폐지하는 한편 '14년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1,871개로 확대
 - '16년 1월 4일, 국무원은 '가공무역 혁신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国务院关于促进加工贸易创新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 '중국제조 2025' 시행에 맞춰 제조업 및 가공무역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와 고부가가치화 전격 추진할 예정

□ 통상정책 방향

-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한 통상의 외연확대
 - 중국과 유럽·아시아 지역 국가간 물적·인적 교류, 인프라 투자, 자본 이동 등을 확대하여 역내외 국가간의 경제 무역 활성화 추구
 -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추진의 핵심인 A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가 57개 회원국(미국, 일본 불참) 참여로 ‘16년 1월 16일 공식 출범함으로써 중국의 대외통상 및 해외진출 전면 확대 전망
- 자유무역시범구 확장, 한국 및 호주와의 FTA 정식 발효
 - ‘14년 중국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구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및 대외투자 활성화 전망
 - ‘15년 12월 20일 한-중 및 중-호주 FTA 발효, 순차적인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수출입 원활화 및 해당국가 교역조건 개선 기대
- 중국 ‘16년도 수출입관세 잠정 인하
 - ‘15년 12월 10일, 중국 재정부는 총 787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잠정 인하, 총 250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 인하 및 무관세 조치
 - 수입관세 인하 주요 품목은 해외로부터의 소비수요가 높은 가방, 의류, 화장품, 스카프, 텀블러, 선글라스 등의 소비재와 하이테크 장비, 에너지 자원과 환경관련 제품 등
 - 수출관세는 대부분 최근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각종 금속광물, 화학제품, 펄프 등 원부자재, 일부 오염물 및 폐기물에 대해서는 인하
 - * 희토류를 제외한 일부 산업 핵심 원자재 및 주요 광물의 수출관세는 인상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6년 내 타결 가능성 높아져
 -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음.
 -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15년 10월 타결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RCEP 참가국들은 2016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가국은 '15년 8월에 상품 1차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돼 양허협상이 개시된 상태

* '15년 11월 RECP에 참여하는 16개국 정상들은 2016년 타결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환경·건강·안전관련 수입 규제 강화 전망

- 최근 중국의 질적 성장 이후 환경·건강·안전 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 증대, 관련 유해제품의 수입 규제와 인증 강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
-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은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는 가운데, 의료, 의약품, 일부 하이테크 산업 등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가능성 큼
- 반독점법 강화, 세무조사 강화 및 반부패 정책 등 최근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는 일시적 조치가 아닌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와 준수 필요

○ 특정 산업 및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 보다 관세조정, 소비세 인하 등의 간접적 정책 시행과 반독점법,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견제 병행

- 중국은 향후 직접적인 수입규제 보다는 관세 및 소비세 조정 등을 통한 수급 조정과 수입 제한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
- 저부가가치 가공무역 비중은 축소하는 가운데, 일부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분야는 반독점법, 세무조사 등으로 외자기업 진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상존
-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환경보호를 위한 핵심 부품, 기계 및 기술 수입은 과감한 수입 확대 정책도 병행할 전망

[칠레]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칠레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이유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구급차, 소방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차량의 경우는 수입 허용
- 설탕 등 일부 농수산물물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수입쿼터를 시행하고 있음. 품목별 쿼터량은 수입원산지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설탕제품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대해 수입쿼터를 두고 있음.
 - 원산지별 품목별 쿼터는 관세청 홈페이지(www.aduaa.cl) 메뉴 중 온라인 처리 (Tramitaciones en la line)의 쿼터상담(Consulta Cupos)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

□ 통상정책 방향

-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가진 나라중 하나로 22개의 FTA협정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60개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국가는 세계 총 GDP의 85.7%, 칠레 수출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10월에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으로 중남미, 북미, EU시장으로의 진출거점으로서 칠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칠레 정부는 2016년에도 경기침체 부양정책, 사회 불평등 해소,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현재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인 제품 이외에 수입규제 예상되는 품목 없음.

[캐나다]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캐나다는 현재 총 29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중이거나 조사를 진행 중인데, 대부분이 철강 및 금속 관련 제품임.
 - 철강 및 금속 관련 규제는 총 23건으로 중국, 인도, 한국, 터키 등이 주된 대상국 이 되고 있음.
 - 한편, 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시행중이거나 조사중인 규제는 총 8건인데, 이중 6건 이 2012년 이후에 조사가 시작된 것임.
- 철강금속 관련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3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시작된 덤핑조사는 총 8건으로, 이중 7건 모두 철강 및 금속 제품이 대상이며, 이중 4건은 한국도 해당되 는 사항임.
 - 한편, 상기 최근 8건에 대한 덤핑 조사 중 6건은 대상국의 보조금도 조사 대상으 로써, 캐나다 정부는 최근 들어 반덤핑 관세 뿐만 아니라 상계조치에 대해서도 보 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캐나다는 2015년 6월 10일, 인도 및 러시아산 후판(Certain Steel Plate)에 대 한 덤핑/보조금 혐의에 대한 신규 조사 착수를 발표했는데, 캐나다는 이미 동일 품 목에 대해 중국, 한국, 일본 등 11개국에 반덤핑 관세 부과중임.
-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2014년 12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를 조사, 2015년 6월3일 9.3~154.4%의 덤핑과 0.011~0.34RMB/Watt의 보조 금이 지급되었음을 최종 결정함.

〈캐나다의 수입규제 현황〉

구분	대상국가	품목(조사중 포함)	품목수
철강 및 금속	한국 포함	열연강판-후판 7 (Steel Plate VII), 유정용 강관 2(Oil Country Tubular Goods II),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 동관(Copper Tube), 동제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콘크리트보강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탄소강용접관 2 (Carbon Steel Welded Pipe)	7
	한국 이외	알루미늄사출(Aluminum extrusion)), 탄소강용접관 1(Carbon Steel Welded Pipe) 탄소강 화스너(fasteners : screws, bolts, nuts etc), 열연강판(Hot-rolled steel sheet) 유정용 강관 1(Oil Country Tubular Goods), 파일링 강관(Piling Pipe), 철강제 강관 이음새(Pipe joints), 무계목케이싱강관(Seamless Casing), 실리콘메탈 (Silicon Metal), 철강제 싱크 (Stainless Steel Sinks), 철강제 구조물 (Steel Grating), 열연강판-후판 3 (Steel Plate III), 열연강판-후판 5 (Steel Plate V), 열연강판-후판 6 (Steel Plate VI), 알루미늄제 건축구조물(Unitized Wall modules : 문, 창 등) 태양광 패널 (Photovoltaic modules and laminates) (덤핑/보조금, 2015.6.3. 최종 판정) 특정 열연강판-후판 8 (Certain Steel Plate VII) (2015.6.10 신규 조사 개시)	17
그 외 기타	한국포함	유압식 변압기	1
	한국이외	감자, 기타 냉장(동)고, 정제당, 녹색피망	4
수입규제 품목 총계			29

(자료원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 통상정책 방향

- 미국 중심의 무역 구조 탈피를 위해 유럽연합과 아시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
 - 한국과 캐나다의 FTA는 2014년 9월 정식 서명, 12월 의회 비준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
 - 2014년 8월, 캐나다와 EU간의 FTA(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22개국 언어로 협정문 번역 작업 진행 중
 - 2015년 10월 5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를 체결했으며, 2016년 중 의회 비준 절차 진행예정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캐나다 경기의 회복세 둔화, 재정 적자 누적에 따른 정부 지출 부담 등으로 자국 시장 보호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수입 규제는 보다 강화될 전망
- 캐나다의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해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나, 캐나다의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제품 및 산업이 주된 타겟이 될 가능성 높음.
 - 캐나다의 수입 규제 중 상당수가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간 누적된 중국과의 무역 수지 불균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음.
 - 철강산업이나 태양광 산업의 경우, 온타리오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제조기업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내수시장 협소, 국내 경기 정체, 신흥국에서 중저가의 수입품 난입 등으로 현지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완성차가 가장 큰 무역수지 불균형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지 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나 북미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감안할 시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국 상무부의 對韓 수입규제 동향 주시 필요
 -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조사 착수 품목은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덤핑 판정을 내린 품목과 유사한 경우가 잦음.

-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국산 강철못, 냉장고, 무방향성전기강판(Non-Oriented Electrical Steel) 등이 캐나다에서도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코스타리카]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페인트 품목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가 있으며 해당 제품업자에게 516%의 부가가치세 반덤핑권한을 부여
 - 무역 안정화 및 균형 추구를 위해 FOB 정상가로 알려진 깬런당 \$10.52 로 수입하기 위함.
 - Reca Quimica S.A사의 신청으로 2010년 11월 23일 조사 시작하여 2011년 2월 1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갖게 됨.
- 그 외 특별한 수입규제 동향은 없음.

□ 통상정책 방향

- 코스타리카는 2007년 이후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온 결과 현재 전체 수출의 68%, 수입의 76%가 FTA 체결국이며, 중국과는 2010년 체결하여 관세 특혜를 보고 있음.
- 한-중미 6개국 FTA 협상 진행
 -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로 구성된 중미 6개국과 한국의 FTA 협상이 2015년 6월 개시돼, 현재 2차까지 진행됨.
 - 2015년 9월의 1차 협상 :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및 통관, 정부조달, SPS, TBT, 총칙 등에 대해 협의
 - 2015년 11월의 2차 협상 : 상품양허내용 등 협의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특별히 對韓 수입규제 예상되는 품목 없음.

[콜롬비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5년 12월 31일 현재 반덤핑 관세부과 건수는 총 14건으로 이 중 중국 제품의 비중이 총 13건으로 93% 차지
 - 중국에 이어 한국이 2건, 멕시코, 베네수엘라, 인도가 각 1건의 반덤핑 관세부과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건도 마찬가지로 전체 6건 중 4건이 중국제품으로 콜롬비아 정부의 수입규제조치 주요 대상국이며 인도제품도 2건 조사 중임.
- 세이프가드의 경우, 현재 1개 품목(PVC 프로파일)에 대해 조사 진행 중에 있음.

〈15.12월말 기준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 중인 품목 현황〉

No.	품목	HS Code	대상국	수입규제형태
1	저탄소 와이어	7213.91.90.10 7213.91.10.10 7227.90.00.11 7227.90.00.90	중국	반덤핑
2	기와/세라믹 타일	6907.90.00.00 6908.90.00.00	중국	
3	6인치 공구용 줄	8203.10.00.00	인도	
4	인테리어 디자인 판넬	3921.90.10.00	인도	
5	구두 뒷축용 가죽, 인조가죽 및 섬유	6402.19.00 6402.20.00 6402.91.00 6402.99.10 6402.99.90 6405.90.00	중국	

		6404.11.10 6404.11.20 6404.19.00 6404.20.00 6405.20.00 6403.19.00 6403.20.00 6403.40.00 6403.51.00 6403.59.00 6403.91.10 6403.91.90 6403.99.10 6403.99.90 6405.10.00		
6	아연도금 체인	7315.82.00.00	중국	
7	PVC 프로파일	3916.20.00.00		세이프가드

(자료: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IT))

□ 통상정책 방향

- 콜롬비아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시장개방과 자유경쟁으로, 태평양동맹(PA) 같은 역내 자유무역 확대는 물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과의 FTA 체결을 통한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 또한, APEC 가입 추진, TPP 참여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 등 지속적인 시장 확대 및 글로벌 시장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콜롬비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상실 및 경쟁국의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 업계의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요구도 거세지고 있음.
 - 그 결과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분야의 수입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통상정책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중장기적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체질 강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경

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양화를 지원 중

- 이에 따라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인 개방과 자유경쟁은 유지하면서 일부 분야에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한국의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 기계류 및 화학제품 등은 이미 고관세 부과대상 품목으로 추가적인 수입규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
 - 현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품과 중복되는 제품의 경우 추가 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대부분 자국 생산제품으로는 전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 수입규제는 불가할 것으로 보임.
- 콜롬비아 정부의 최우선 규제대상은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섬유, 의류, 신발 등 자국산과 경쟁하는 제품 및 철강재와 단순 중간재 분야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됨.

[키르기스스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산업비중도
 -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키르기스스탄은 1차 산업 특히 농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없음.

□ 통상정책 방향

-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가입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경제 공동체인 EEU 가입이 2015년 5월 8일에 완료되었음.
- '15년 12월말 현재 실질적인 세관 철폐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은 각종 경제 분야 및 산업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향후 변동사항 관찰필요

□ 수입규제 예상품목

○ 대한 수입규제 전망

- 최근 3년간 양국 간의 갑작스런 무역수지 증감과 수출입액의 갑작스런 증감세를 보이는 품목이 없고,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 또한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잠재적 수입규제 예상품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태국]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태국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를 실시하는 주요 품목은 철강제품임.

- 자동차 및 전자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철강업체(Sahaviriya Steel Industries(SSi), G Steel, BSI Group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 태국 정부는 철강을 기존의 priority watch list에서 sensitive list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분류함.

○ 태국은 철강 수요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

- 태국은 2015년 ASEAN의 철강 총 소비량 6천만 톤 중 30%(약 1천 8백만톤)를 차지하는 역내 소비 1위 국가임.
-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태국산 철강제품의 다양성 부족, 품질과 가격 경쟁력 부족 및 중국산 철강제품 대량 수입으로 인하여 2015년 태국 철강소비량

중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여 전년 대비 10% 증가함.

- 태국 정부는 2015년 하반기 태국 철강업체의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한국, 대만 및 베트남산 철강제품에 관한 반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할 계획

□ 통상정책 방향

- 태국의 통상정책은 무역을 성장엔진으로 하는 태국이 경쟁력 있는 국가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태국은 적극적, 지속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준수하며, 다자간 및 지역적 주도하의 단계적, 점진적, 전향적 자유화 정책 추진
 - 전체 양허대상 품목을 일반품목, 일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별하여 연차적 관세인하
-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인한 ASEAN 역내 교류 확대
 - ASEAN 회원국 간 관세 인하 및 면제를 통해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구축 및 제조업 생산기지 건설 등으로 인해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태국 기업 또한 산업별로 ASEAN 역내 국가 업체 인수, 시장진출 등을 진행하며 역내 교류와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
 - ASEAN 역내 인접국가들 및 중국과 인도 등 기타 아시아지역으로의 교역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AEC의 대표적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제품
 - 태국 상무부내 해외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trade)는 자국 철강업체의 요청에 따라 한국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터키]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터키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로 반덤핑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등을 다수 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세이프가드 조치 빈도가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함.
 - 경쟁력이 부족한 터키 제조업체가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하는 사례 빈발
 - 2014년 이래 산업피해 구제를 넘어 무역수지 적자 방어용으로 의심될 만한 세이프가드 조사 사례(예: 휴대전화) 대두
- (수입감시제도) 수입 벽지류에 일률적 관세평가액 적용, 감시수수료 부과
 - '13.8.7일 HS CODE 4814 벽지류 전 제품에 대해 kg당 6달러의 일률적 관세평가액을 적용하는 수입감시제도를 시행하고 관세평가액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18%)를 감시수수료로 부과
 - 이에 이어 '14. 12월 벽지류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고 '15. 6월에 최종판정을 내림에 따라 벽지는 2중의 규제에 가로막힘.
- (기술규제) GMO 관련 법규 시행
 - '09.10월 터키는 “GMO 포함 식품,사료의 수출,가공,수입,통제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GMO 포함 제품의 터키 반입이 금지됨.
 - '10년 Biosafety Law과 GMO 및 제품에 대한 규정(Regulation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Products)및 Biosafety Board 규정 공포, 시행
 - '14.5월 0.9% 이내의 GM재료의 오염을 허용한다는 완화규정을 공포하였으나, GMO 수입금지 규정에 따라 GM대두를 사용 생산한 한국산 라면, 간장, 된장이 전면 수입금지됨.
 - 유산균 제품의 경우 Non-GMO 인증의무가 수출국 인증기관에 부과되어, 수입 절차를 어렵게 하는 기술장벽이 존재함.

□ 통상정책 방향

○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13년 1천억 달러에 달한 무역수지 적자가 ’14년 845억 달러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15년에 다시 98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등 무역수지 적자는 터키 경제에 장기간 누적되어 온 가장 큰 난제임.
- 에너지 및 광물연료 수입이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바,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확대계획 추진 중
- 대EU 수출과 아프리카,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코자 함.

○ EU가입협상 재개

- 2015년 11월 29일, 터키-EU 정상회의에서 다부토올루 터키 총리는 터키의 EU가입 절차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 터키의 EU가입 협상은 2004년 12월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결정돼 2005년 10월 개시됐으나 키프로스 문제 등 정치적 난제로 진전없이 중단된 상태였음.
- 최근 대규모 난민이 터키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유입됨으로써 EU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터키에 난민유입을 막아주도록 요청하면서 EU가입 협상이 재개된 것임.
- 터키 내 다수 경제계 인사들은 난민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EU가입협상 재개에 의구심 가지는 편이나, 터키 수출의 40%가 EU로 향하는 등 터키 경제에 있어 EU가입은 매우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안이며, EU로서도 시리아 난민문제에 있어 터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EU가입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 높음.

○ 극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FTA체결 적극 추진

- 한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싱가포르와도 FTA타결 및 발효 추진
- 2015년 11월, 터키-싱가포르간 포괄적무역협정인 TRSFTA 조기 발효 위해 노력하기로 양국 경제부장관 합의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한국의 주요 對터키 수출품은 대부분 터키 산업에 원재료, 부품, 장비로 공급되어 가공 후 재수출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입량 급증이 직접적으로 관련 업종의 수입규제 요청을 유발하는 무역구조는 아님.
- 현재로서는 특별히 수입규제 예상되는 품목 없으나 가구류, 섬유류, 신발류 등 터키 국내 산업의 성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분야는 항상 수입규제의 잠재적 대상이 되고 있음.

[튀니지]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현재 튀니지는 3개 품목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대상이 되는지 조사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결과 확정된 건은 없음.

□ 통상정책 방향

- 무역적자 감소 추세에 따라 약 97%의 품목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할 정도로 수입금지 품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다음과 같은 품목은 여전히 정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HS CODE	PRODUCT
160414	Canned tuna
1806	Chocolate and preparation containing cocoa
1901	Food preparation of meal, gruel, flour, starch or malt extracts without coca or containing cocoa less the 40% of the weight
1905	Products of bakery or pastry.
2005 & 2006	Food preparation of vegetables
2007 & 2008	Jam, jelly, puree and fruits preparation
2009	Fruit or vegetable juice
2103	Preparations for sauces or prepared sauces, mixed condiments and seasonings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composés; farine de moutarde et moutarde préparée
2105	Ice cream
2106	Food preparation not elsewhere specified
2202	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3303 & 3307	Fragrances, make-up products, toilettries, hair coloration products, preparation for oral or dental hygiene, 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s, deodorizing body spray.
3401 3402	Soap, Washing preparations and cleaning preparations
4411	Medium density fibreboard
4418	Doors and their frames
4810 except 48102200912 48102200105 48102980102 48102200990 48103290903 48103290107	Cardboard
6109 6110 6203 6204 6205	Shirts, T-shirts, lightweight fine knit roll, polo or turtlenecked jumpers Men's or boys' suits, ensembles, jackets, blazers,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other than swimwear) Men's or boys' shirts.
6401 & 6405	Shoes
69079020014 6908	Ceramic tiles
6910	Ceramic sanitary ware
701090 7013	Carboys, bottles, flasks, jars, pots, phials, ampoules and other containers, of glass, of a kind used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preserving jars of glass; stoppers, lids and other closures, of glass. Glass objects for table service and kitchen
76042910902 76041090005 76041010105 76042990006	Aluminium profiles
83013000 83014011 83014019	Steel locks used on furniture Cylinder locks used on doors for buildings Other cylinder locks used on doors for buildings
83021000 02491644 83024200	Hinges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s used suitable for building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Suitable For Furniture, Of Base Metal
8419110	Water heater
8509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Parts
8544499; 8544460; 8544429	Electric cables

8517	Electrical Apparatus for Line Telephony Or Line Telegraphy, Including Such Apparatus For Carrier-Current Or Digital Line Systems; Parts
870120	Road tractors for Semi-Trailers
8702	Motor Vehicles for transport Of Ten Or More Persons, Including The Driver
8704	Motor Vehicles for Transport Of Goods
9503	Toys, Scale Models Etc.; Puzzles; Parts And Accessories
9504	Articles for funfair, table or parlour games
9608	Ball Point Pens; Soft Tipped Pens and Markers
9609	Pencils (With Encased Lead), Crayons, Pencil Leads, Pastels, Drawing Charcoals, Writing or Drawing Chalks And Tailors' Chalks
9610	Slates and Boards, With Writing Or Drawing Surfaces
9611	Date, Sealing Or Numbering Stamps, Etc.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특별히 예상되는 對韓 수입규제 품목 없음.

[파키스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자국 업체의 수입규제 제기를 폭넓게 인정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에 따르면 정부는 현지 제조업자가 제기한 수입규제 요청을 가능한 인정하려는 입장
 - 최근 수입규제 동향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반덤핑 조사절차에 따라 생산, 판매 하락, 재고, 고용, 이윤, 시장점유율 등의 지표와 관련 파키스탄 국내 산업의 손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평가함.

□ 통상정책 방향

- 반덤핑 위주의 규제 동향
 - 현재 對韓 수입규제는 모두 반덤핑 규제이며, 세이프 가드, 기술규제(TBT), 환경 규제(녹색규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임.

- 또한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파키스탄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 추진

-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기존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 중임. 이는 특히 중국과의 FTA 발효 이후 무역적자가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화학, 섬유, BOPP 필름, 주석류, 제지, 강철 등

- 앞서 언급한 수입규제 품목과 같이 파키스탄은 주로 화학 등 무역수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규제당국 담당자에 따르면, 자국 유치산업 보호 관점에서 상기 품목들에 대한 추가 수입규제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임.
 - (백판지) 현지 업체가 한국산 백판지(HS 4810.9200, 4810.9900)에 대해 반덤핑 규제 요청한 상태이며, 파키스탄 규제당국(National Tariff Commission)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반덤핑 조사개시 여부 결정할 예정

[필리핀]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필리핀 경찰청(PNP), 폭발물·폭발물재료·규제 화학물질 관리 강화

- PNP는 2015년 7월 22일에 폭발물 및 규제 화학 물질 관리에 관한 공문(memorandum)을 발행하고, 41개의 화학물질을 규제 목록에 추가하였음.
 - 공문에 따르면 기업은 폭발물, 폭발물 재료, 규제 화학물 구입 및 운반 시 PNP로부터 임시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함.
 - 수입 및 하역 역시 임시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함.

〈규제 목록에 추가된 41개 화학물질〉

CONTROLLED PRECURSOR CHEMICALS (UNDER R.A. No. 9516)			
1	ALUMINIUM GRANULES	22	PHOSPHORUS
2	ALUMINIUM POWDER	23	PHOSPHORUS RED
3	AMMONIUM SULFATE	24	PHOSPHORUS SESQUISULPHIDE
4	AMORPHOUS PHOSPHORUS	25	PICRIC ACID
5	BARIUM CHROMATE	26	POTASSIUM IODATE
6	BLACK POWDER	27	POTASSIUM PERMANGANATE
7	COMPOSITION 4	28	POTASSIUM SULFATE
8	DELAY COMPOUND	29	PROPELLANT CHARGES
9	DI-NITRO-TOLUENE	30	PROPYLENE GLYCOL
10	EMULSION MATRIX	31	SLURRY BLAST AGENT
11	GALLIC POWDER	32	SLURRY POWDER
12	GLYCERINE	33	SMOKELESS POWDER
13	GLYCEROL	34	SODIUM CHLORITE
14	HYDROCHLORIC ACID	35	SODIUM PERIODATE
15	HYDROFLUORIC ACID	36	SODIUM SULPHATE
16	HYDROGEN CHLORIDE	37	SODIUM NITRITE
17	HYDROGEN PEROXIDE	38	SULFUR POWDER
18	M-201 FUSE	39	SULFURIC ACID
19	NITROCELLULOSE	40	TETRYL
20	NITROGLYCERINE	41	TOLUENE
21	PHOSPHORIC ACID		

자료원: 필리핀 경찰청(PNP)

□ 통상정책 방향

- 필리핀은 2015년 12월 ASEAN 경제공동체(AEC) 출범 이후에도 EU, 캐나다 등과의 FTA 체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의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개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하거나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해 온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입규제나 세이프가드를 이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對한국 수입급증 품목인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유리괴(HS Code: 70)
 - 필리핀 전체 수입액은 2015년 9월 기준 163백만 달러 규모이며, 한국에서의 수입액은 11백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939% 증가, 점유율은 6.7%임.
 - 2014년까지 한국産 제품은 수입 점유율에서 15위권에 해당하였으나 2015년 9월 기준 3위를 기록하면서 점유율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음.(1위 중국 55.0%, 2위 인

도네시아 10.5%)

- 동 제품은 필리핀 수입이 매년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 제품이며 현재 세이프가드 같은 직접 수입규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나 꾸준히 동향을 살펴야 할 제품으로 간주됨.

[호주]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5년 하반기 동안 호주 내 철강 제조사의 활발한 무역구제 신청과 이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가 있었음.
 - 다행히 한국산 제품의 경우 미소마진으로 무혐의 판결이 내려지는 등 피제조 업체의 재심의 요청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 기술규제(TBT) 및 정부조달 시장 등에서 명시적 차별조치는 미미
 - 호주는 연방 정부조달 시장 및 주정부 조달 시장에서 해외업체와의 구분을 따로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열린 시장을 추구 하고 있으나, 조달 관련 단순 소모품이 아닌 품목(IT, 건설 등)에서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 유무와 역량이 실제 낙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외 업체의 독립 진출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호·중 FTA 발효 예상
 - 호주 정부는 2015년 6월 17일에 중국과의 FTA에 정식 서명하고 2015년 내 발효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 2016년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철강제품,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은 호주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여 가격 및 품질 뿐 아니라 마케팅 및 영업망에 따른 중국산과 경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현재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협상 중에 있으며, 빠르면 2016년 말에 체결될 가능성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 및 금속제품) 호주 철강업계의 추가 제소 움직임 예상
 - 한·중·일 동아시아 3국 및 대만 등이 호주의 철강 및 금속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호주 내 철강제조사들은 최근 비용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수입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철강 및 금속 산업으로, 호주 전체 수입규제 품목 27건 중 14건이 철강금속 제품이며, 2016년에도 철강, 철판, 강관, 코일, 도금, 비철 금속제품 등에 대한 활발한 추가 제소 움직임이 예상됨.

[EU]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15년 하반기 EU 역외국 관련 수입규제 현황
 - EU 집행위가 '15년 12월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87건의 반덤핑 규제와 11건의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조사 중인 건수는 총 42건에 달함.
 - '15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EU의 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총 35건으로 신규조사(New investigation)가 10건, 종료재심(Expiry review) 9건, 중간재심조사(Interim review)가 8건, 기타 재심(Other review) 1건, 반우회덤핑(anti-circumvention) 6건이 해당

〈'15년 이후 조사개시된 EU 수입규제 현황〉

규제 유형	품목 명	국명(관보)
반덤핑	고성능 철근 콘크리트용 (High fatigue performance steel concrete reinforcement bars)	중국(C 143)
반덤핑	냉연강판(Cold-rolled flat steel products)	중국 러시아 (C 161)
반덤핑	아스파탐(Aspartame)	중국(C 177)
반덤핑	시클라멘산 나트륨(Sodium cyclamate)	중국(C 264)
반덤핑	세라믹 폼 필터(Ceramic foam filters)	중국(C 266)
반덤핑	스테인리스관과 용접용 관이음쇠 (Stainless steel tube and pipe butt-welding fittings)	중국 대만 (C 357)
반보조금	덕타일 주철관 (Tubes and pipes of ductile cast iron)	인도(C 83)
반보조금	유럽산 농어와 먹도미류 (European sea bass and gilthead sea bream)	터키(C 266)
종료 재심	링바인더(Ringbinder mechanisms)	중국(C 67)
종료 재심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중국(C 174)
종료 재심	시클라멘산 나트륨(Sodium cyclamate)	중국 인도네시아 (C 189)
종료 재심	몰리브덴 선(Molybdenum wires)	중국 (C 194)
종료 재심	알루미늄 로드휠 (Aluminium road wheels)	중국 (C 355)
종료 재심	글루콘산나트륨(Sodium gluconate)	중국 (C 355)
종료 재심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중국 (C 376)
종료 재심	폴리에스테르 강력사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	중국 (C 397)
중간 재심	철강제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한국(C 58)
중간 재심	솔라패널(Solar panels)	중국(C 147)
중간 재심	솔라패널(Solar panels) AS	중국(C 147)
중간 재심	바이오디젤(Biodiesel)	미국(캐나다) (C 162)
중간 재심	바이오디젤(Biodiesel) AS	미국(캐나다) (C 162)
중간 재심	실리콘메탈 (Silicon metal (silicon))	중국(C 286)

규제 유형	품목 명	국명(관보)
중간 재심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Threaded tube or pipe cast fittings, of malleable cast iron)	중국 태국 (C 392)
기타 재심	제올라이트(Zeolite A powder)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C 17)
신규수출자 재심	철강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한국 (L 309)
반우회덤핑	몰리브덴 와이어(Molybdenum wires)	중국(L 66)
반우회덤핑	시트르산(Citric acid)	중국(말레이시아) (L 113)
반우회덤핑	솔라패널(Solar panels)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L 132)
반우회덤핑	솔라패널(Solar panels) AS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L 132)

자료: EU 집행위

〈'11년~15년(11월 30일까지) 간 품목별 신규 조사 현황〉

A. New investigations initiated by product sector during the period 2011 – 2015

Product sector		2011	2012	2013	2014	2015
Chemical and allied		11	-	1	2	2
Textiles and allied		-	-	3	-	-
Wood and paper		-	-	-	-	-
Electronics		-	2	-	-	-
Other mechanical engineering		1	1	-	-	-
Iron and Steel		6	11	1	9	6
Other metals		1	-	-	3	-
Other		2	5	4	2	2
		21	19	9	16	-
Of which	anti-dumping	17	13	4	14	8
	anti-subsidy	4	6	5	2	2

자료: EU 집행위

□ 통상정책 방향

- '15.10.14, EU 집행위는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신 통상투자전략(New Trade and Investment Strategy)'을 발표.
 - 효율성, 투명성, 가치라는 3개 핵심원칙*에 기초해 통상정책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둠.
 - * ① 중소기업, 소비자, 근로자가 더 개방된 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 (효율성)
 - ② TTIP 협상사례와 같이 EU에서 협상중인 문서의 대중공개(투명성)
 - ③ 무역협정에 반부패원칙 등을 포함시켜, 교역 파트너들이 아동노동 철폐와 같은 핵심 근로 기준 이행 촉진(가치)
-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 Cecilia Malmström에 따르면, EU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출지역권으로 EU 내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향후 글로벌 성장의 90%가 EU 역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상협정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16년 이후 EU 통상정책은 기존 협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가들과의 통상협상을 지속적으로 시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 EU-미국 FTA(TTIP), EU-일본 FTA, EU-중국 투자협정(BIT)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협상들을 마무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또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FTA 협상 추진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킨다는 계획 역시 포함되어 있음.
- 이번 신 통상투자전략을 통해 EU가 무역(Trade)을 정부 예산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복돋울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정책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통상협상을 통해 유럽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품목

- 최근 EU 역내 철강업계의 전반적인 공급과잉으로 역내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 이 같은 상황에서 EU 철강기업들은 중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철강제품의 역내 수입 증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15년 EU에서 조사 개시한 신규품목 전체 10건 중 6건이 철강 제품인 만큼, EU 차원에서도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시장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 유아용 완구제품

-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닿는 완구제품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음. '14년 한 해 동안 개정된 완구제품 내 화학물질만 3건에 달했으며 '15년도 납(Lead)성분 개정지침(4월) 및 5종 보존제* 허용치 조정 개정지침(11월)을 마련한 바 있음.

* 5종 보존제 : 포름아미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벤즈이소치아졸리논, 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첨 부]

〈 국가별/조치유형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5.12.31 현재)

국 가	반 덤 핑	세 이 프 가 드	반덤핑/상계 관세, 상계 관세	계
남아공	1	1	0	2
대만	1	0	0	1
말레이시아	4(1)	2(1)	0	6(2)
멕시코	1	1	0	2
미국	12(1)	0	6(3)	18(4)
베트남	0	3(2)	0	3(2)
브라질	11(1)	0	0	11(1)
아르헨티나	2(1)	0	0	2(1)
에콰도르	0	1(1)	0	1(1)
요르단	0	1(1)	0	1(1)
우즈베키스탄	1(1)	0	0	1(1)
우크라이나	0	3(1)	0	3(1)
이스라엘	0	1	0	1
이집트	1(1)	2(1)	0	3(2)
인도	20(2)	6(2)	0	26(4)
인도네시아	5(2)	6(2)	0	11(4)
일본	1(1)	0	0	1(1)
잠비아	0	1(1)	0	1(1)
중국	12(2)	0	0	12(2)
칠레	0	4(4)	0	4(4)
캐나다	8	0	0	8
코스타리카	0	1	0	1
콜롬비아	2	2(1)	0	4(1)
태국	4	3	0	7
터키	5	7(2)	0	12(2)
튀니지	0	3(3)	0	3(3)
파키스탄	4(1)	0	0	4(1)
필리핀	0	3	0	3
호주	10(2)	0	0	10(2)
EU	4	0	0	4
총 30개국	109(16)	51(22)	6(3)	166(41)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 국가별/품목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5.12.31 현재)

국가	철강/금속	화학	섬유	전기전자	기타	계
남아공	0	1	0	0	1	2
대만	1	0	0	0	0	1
말레이시아	5(2)	1	0	0	0	6(2)
멕시코	1	0	1	0	0	2
미국	15(4)	0	1	2	0	18(4)
베트남	1(1)	1(1)	0	0	1	3(2)
브라질	3	6(1)	1	0	1	11(1)
아르헨티나	0	1	0	1(1)	0	2(1)
에콰도르	0	0	0	0	1(1)	1(1)
요르단	0	0	0	0	1(1)	1(1)
우즈베키스탄	0	0	0	0	1(1)	1(1)
우크라이나	1	1(1)	0	0	1	3(1)
이스라엘	0	0	0	0	1	1
이집트	1	2(2)	0	0	0	3(2)
인도	6(2)	17(2)	2	0	1	26(4)
인도네시아	7(2)	1(1)	1	0	2(1)	11(4)
일본	0	1(1)	0	0	0	1(1)
잠비아	1(1)	0	0	0	0	1(1)
중국	1(1)	8	2(1)	0	1	12(2)
칠레	4(4)	0	0	0	0	4(4)
캐나다	7	0	0	1	0	8
코스타리카	0	0	0	0	1	1
콜롬비아	1	3(1)	0	0	0	4(1)
태국	6	0	0	0	1	7
터키	1	2	3	1(1)	5(1)	12(2)
튀니지	0	0	0	0	3(3)	3(3)
파키스탄	0	3	0	0	1(1)	4(1)
필리핀	1	0	0	0	2	3
호주	8(2)	1	0	0	1	10(2)
EU	3	1	0	0	0	4
총 30개국	74(19)	50(10)	11(1)	5(2)	26(9)	166(41)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2016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6-001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16.1
16-002	2016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6.1
16-003	세계의 번뜩이는 중소기업 혁신상품 100선	2016.1
16-004	저유가시대 미 세일산업 대응현황	2016.1
16-005	신통상투자전략으로 미리보는 2016년 EU 통상정책	2016.1
16-006	2016년 주목해야 할 세계의 주요 정치 통상 일정	2016.1
16-007	2015년 하반기 대한수입규제 동향과 2016년 전망	2016.1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6-001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논의 현황 및 유망 프로젝트 조사결과	2016.1
16-002	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B-BBEE] 안내서	2016.1
16-003	해외로 나간 청년들, 세계를 JOB다!	2016.1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6-001	2016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5.12
16-002	2016 전략시장 진출방안 설명회	2015.12
16-003	2016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6.1
16-004	쿠바 유망산업 진출 세미나	2016.1
16-005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23차 수요포럼	2016.1



작 성 자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타이베이무역관	박지현
◆ 모스크바무역관	김하민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멕시코시티무역관	민희정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하노이무역관	유선아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하은주
◆ 키토무역관	하 늘
◆ 암만무역관	진준현
◆ 타슈켄트무역관	채병수
◆ 키예프무역관	박대희
◆ 텔아비브무역관	안세은
◆ 카이로무역관	노정민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자카르타무역관	신경련
◆ 도쿄무역관	이세경
◆ 베이징무역관	정진우
◆ 산티아고무역관	김주영
◆ 토론토무역관	이제혁
◆ 파나마무역관	권근혜
◆ 보고타무역관	성기주
◆ 알마티무역관	김정훈
◆ 방콕무역관	김남욱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룡
◆ 알제무역관	조기창
◆ 카라치무역관	이동훈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시드니무역관	윤준기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통상전략팀	김건숙



Global Market Report 16-007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6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6926-96-3(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2015년 하반기 對韓수입규제 동향과 2016년 전망
